

제21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 일시 : 2015. 11. 14.(토) 14:00 - 18:0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원 공학1실
- 주최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 후원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행사 프로그램 ●●

[1부] 개회 행사 (14:00-14:30)

등록 13:30~14:00

개회선언 : 사회자 김윤나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총무이사)

국민의례

- 개회사: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장 최윤진(중앙대학교 교수)

- 기조발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언론 평가 분석

-법·인권교육 관점에서의 과제를 덧붙이며-

허종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전 본회 회장)

[2부] 주제 발표 및 토론(14:30-17:00)

제1주제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과 쟁점(14:30~15:20)

좌 장 :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발제자 : 박혜경(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교육학박사)

<토론>

패널 1. 박찬권(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패널 2. 이덕난(국회 입법조사관, 교육학박사)

휴식 (15:20~15:40)

제2주제 인성교육진흥법의 법·인권교육적 쟁점과 과제(15:40~16:30)

좌 장: 임종수(한국학교법률연구소장, 법학박사)

발제자: 최종찬(충북 주덕고 교사, 한국교원대 박사 수료)

<토론>

패널 1. 이대성(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교육학박사)

패널 2. 김철홍(국가인권위원회 과장)

제3주제 인성교육진흥법상 핵심 가치·덕목 및 역량과 법교육(16:30~17:20)

좌 장: 임종수(한국학교법률연구소장, 법학박사)

발제자: 박인현(대구교대 교수)

<토론>

패널 1. 정상우(인하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패널 2. 이수경(동작고등학교 교사)

종합토론 17:20~17:40

[3부] 공지사항 전달 및 폐회(17:40-18:00)

- 폐회사: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장 최윤진(중앙대 교수)

- 폐회선언: 김윤나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총무이사)

[4부] 만찬 및 친교의 시간(18:00-20:00)

● ● 목 차 ● ●

< 초대의 말씀 >

초대의 말씀최윤진

< 기조발제 >

[기조발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언론 평가 분석
-법·인권교육 관점에서의 과제를 덧붙이며-
.....허종렬(1)

< 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 발표 1]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과 쟁점
.....박혜경(49)

[토론]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토론
.....박찬권(77)

[토론]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토론
.....이덕난(82)

[주제 발표 2] 인성교육진흥법의 법·인권교육적 쟁점과 과제
.....최종찬(87)

[주제 발표 3] 인성교육진흥법상 핵심 가치·덕목 및 역량과 법교육
.....박인현(115)

< 연구 윤리 특강 >

[연구 윤리 특강] 학술연구자의 올바른 연구윤리와 학문 탐구
.....이종근(149)

초대의 말씀

평소 법과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직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 발표회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학회로서는 통산 제21차 학술발표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인성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학술발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2015년 1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현재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에 대한 실효성과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궁극적인 헌법적 정신과 인권적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고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본 학술대회에서 펼쳐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 학술 발표회가 학술적·정책적 차원의 논의를 뛰어 넘어 교육현장의 실천가치의 통찰로 이어져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학술대회의 주제 발제와 토론을 흔쾌히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본 학회의 활동에 대해 평소 전폭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오광수 국장님과 학술대회 때마다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오주언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학술대회 준비에 시간과 정성을 다 해준 학회 사무국과 학술이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최 윤 진 드림

•• 기초발제 ••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언론 평가 분석
-법·인권교육 관점에서의 과제를 덧붙이며-

[기조발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언론 평가 분석 -법·인권교육 관점에서의 과제를 덧붙이며-

허종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겸 법과인권교육연구소 소장)

I. 머리말

II.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언론의 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자의 관점

1. 국회와 사회의 시각의 차이
2. 원내 다툼이 없는 국회의 시각
3. 국회 시각의 해석과 평가

III. 인성과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

1. 인성의 개념
2. 인성교육과 우리나라에서의 역사
3.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과정과 검토 및 심사의견,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

IV.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관한 찬성론 대 신중론의 다툼

1. 인성교육법안 심의 미진
2.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찬성론
3.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신중론 혹은 반대론

V. 인성교육진흥법상의 핵심 가치·덕목 내용의 문제점

1. 윤리 쪽에 치우친 핵심 가치와 덕목들
2. 인성의 범위에 대한 매우 좁은 정의
3. 봉건시대 인성교육과 같은 수구적 가치와 덕목
4. 국가에 복종하는 방향으로의 온순한 덕목으로의 일관

4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5. 교육당국의 산만한 욕심
6. 인성 개념의 확장 필요

VI.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인성평가 입시 반영 문제

1. 대학입시에의 인성 평가 반영 계획 보고
2.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열풍과 입시 반영시 평가기준 마련 가장 큰 고민
3. 사교육시장의 인성교육 열풍
4. 인성 평가 입시반영의 문제점
5. 국회와 교육계, 언론의 부정적 여론의 비등
6. 인성평가의 입시 반영 계획 취소
7. 인성평가 대입 반영 해프닝의 영향 검토

VII.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외주화 문제

1. 인성교육프로그램 외주화의 형식과 내용
2.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외주화의 실태
3. 인성교육프로그램 외주화의 문제점

VIII. 법·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본 인성교육진흥법의 과제

1.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
2. 핵심가치·덕목에의 법·인권교육 관점에서의 보완
3. 법·인권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구체적 효과성 확보

I. 머리말

1. 연구목적

법교육지원법이나 이것과 유사한 각 분야 법률의 경우에는 단지 그 분야의 교육을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지원법은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을 중심으로 의원 102명이 법안 발의자로 서명하고 본회의 참석 국회의원 19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법률로서, 그 영향력이 모든 국가기관들과 전국의 모든 학생들 및 각급 학교에 미치는 것으로 그 성격과 기능, 효력의 차원이 위의 유사 법률들과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 법률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표현한 의견들을 모두 종합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평가와 과제 도출을 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 연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년 동안 이 법률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관계자들과 학계에서 개진한 의견과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이 자체로서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하여 누군가는 한번 해두면 좋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 법률에 대한 모든 관계자들과 학계 의견을 소개함에 있어서 국회 내의 여야 의원들 간에는 아무런 이념상의 대립을 보이지 않은 점과 국회 바깥에서 이 법률의 제정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이념적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다.

셋째, 이 법률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도출 작업을 통해 이 법률이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방법론상 문헌연구를 위주로 하였으며 특히 궁금한 점은 국회 관련 의원실 보좌관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작업을 거쳤다. 이 법률에 관한 2014.5.26.의 법률초안과 2014.12.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동소위원회 회의록,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

6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2014.12.24.의 법사위원회 회의록과 검토보고서, 2014.12.29.의 본회의 회의록 및 최종 통과 법률과 지난 7월 20일의 동법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였다. 아울러 인터넷상의 언론 기사 검색창인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kinds)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하여 995건의 기사들을 검색하였으며, 다시 그 결과 내에서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검색어로 하여 455건의 기사를 검색하였다. 이 기사들의 날짜를 확인해보니 우연히도 첫 기사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이 원고를 최종 마무리하는 시점이 2015년 11월 9일이 되어, 결과적으로 정확히 1년에 걸친 기사들을 보게 되었다. 필자는 지난 며칠 동안 이 기사들을 모두 읽어보고 이 법률과 관련된 의견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 가지 미리 밝혀둘 것은 1차의 ‘인성교육진흥법’ 검색 결과 내에서 혹시나 ‘법교육’ 및 ‘인권교육’을 같이 다룬 기사들이 있을지 싶어 2차 검색을 해보았으나 딱히 이 주제어들을 다룬 기사들은 없었으며, 모두 ‘인성교육진흥법’ 그 자체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문헌 검색에 더하여 인성교육에 관해서 한국교육개발원 현주 박사와 4인의 공동 연구원들이 2013년도에 작성한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1)-인성교육진단 및 발전과제 탐색-”이라는 주제 하의 보고서 내용들을 참조하였으며, 그밖에 부분적으로 독일과 미국의 학교법 관련 단행본 중 인성교육 관련 부분을 검토하였다.

3. 논급 범위

이하 본론에서는 이 연구에 임하는 필자의 관점을 거론하고,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법 자체의 필요성 여부,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 여하, 인성교육의 평가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외주화 당부, 민주시민교육 및 법교육, 인권교육과의 관련성을 논한 다음 결론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인성교육진흥법의 평가와 과제 도출에 관한 연구자의 관점

1. 국회와 사회의 시각의 차이

이번 연구 작업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으로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때로는 쟁점에 관한 이념적 대립이 심각한데, 정작 국회에서는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물론 또다른 진보 야당인 정의당 소속 의원들조차 입법과정에서 서로 간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법률을 검토하고 평가함에 있어서는 국회 바깥과 국회 안의 이 차이를 감안하여야 하는데, 이 점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필자는 관련 입법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판단건대, 이 법률에 관해서는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는 이것을 대표 발의한 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의 야당 측 상임대표인 신학용 의원 등이 상당기간 동안 같이 의논하면서 법안을 같이 만들어 온 것이며, 양측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법률의 입법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2012년도 겨울 대구에서의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일단의 여야의 의원들이 2013년도 봄에 창립한 원내 활동 단체이다. 이 단체는 실제로 학교폭력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 대책 가운데 하나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특단의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여 시작한 것이며, 여기에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빚은 이준석 선장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 법률의 별칭이 소위 이준석 방지법안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필자가 이 법률에 관한 언론상의 각종 의견들을 검색하고 종합해본 결과를 놓고 보면, 위의 국회의 관점과 판이하게 다르며,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이 법률에 대한 평가들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같은 법률을 놓고 국회와 사회의 시각이 다른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법률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고민거리이다.

8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2. 원내 다툼이 없는 국회의 시각

필자도 법률의 내용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제2조(정의) 조항이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을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예시한 것을 보고, 주로 순응적인 덕목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으며, 이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은 물론 과연 이 법률이 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겠는가 하는 우려를 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법률의 입법과정에 틀림없이 야당 측에서 당연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 입법자료들을 보고서는 이 법률의 통과 과정에서는 아무런 쟁점이나 고민이 드러나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이 부분 야당 측이 왜 그랬는지 직접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돌아온 대답은 이 법률에 관해서는 적어도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을 중심으로 순수하게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야가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만들어 온 것이 전부이며, 위에서 이해를 한 바와 같이 양측이 어떤 정치적 목적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 법률에 관해 어떤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이 법률의 순수한 취지대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인성교육이 더욱 잘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국회의 관점과는 아주 다르게, 국회 밖의 세상의 여러 관계자들은 서로 의견들이 극명하게 갈림은 물론, 특히 이 법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현 정부가 여당이 지원을 받아 만든 국민의식화 규범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법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3. 국회 시각의 해석과 평가

우선 사실관계 파악이 정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자면 절대 이 법률은 정부가 여당의 지원을 받아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만든 법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법률의 내용을 보면 특히 핵심 가치와 덕목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오해를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국회의원들의 담당 보좌관들과 이 점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누어보았는데, 그 요지는 그 가치와 덕목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

하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단지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인성을 규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며, 혹 이후 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보완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필자는 분명히 이 법률에 문제가 있으며, 그것들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Ⅲ. 인성과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

1. 인성의 개념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 또는 됨됨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성은 기본적으로 관계적 개념이며, 그 사람이 맺는 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인성’이란 개인적으로 자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성실·근면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사회적으로는 예의를 갖추어 줄 알고,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능력이며, 같이 일을 할 때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아는 품성이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된 권리를 누릴 줄 알되, 같이 정한 규범을 준수하고,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며,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에는 책임을 질 줄 알고, 정의를 추구하되, 부정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저항할 줄 아는 기백을 가진 품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품성이 부모님께 향할 때는 ‘효’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를 향할 때는 ‘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 인성의 내용에 관해서는 말하는 사람마다 그 주관에 따라 조금씩 달리 표현할 수 있겠으나 크게 볼 때에는 서로 비슷한 내용이며,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영남일보, 2015.9.21.). 인성 중 특히 어떤 가치와 덕목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와 그가 속한 국가와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특히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인성 중 중요한 것으로 거론하고 있다(현주, 2013 : 19-20).²⁾

1) 따라서 오늘날 충의 의미는 정당한 권력에 대한 복종과 참여일뿐, 민주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집권이 정당성을 갖지 못한 정권에 대해서는 이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의지, 능력을 다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2) 아동복지포럼의 주제발표에 나선 정창우 서울대 교수는 “인성이란 곧 ‘자신의 내면을 바로고 건전하게 가꾸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이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

2. 인성교육과 우리나라에서의 역사

옛날 중용(中庸)에 “하늘이 명하는 것을 일러 본성이라 하고(天命之謂性), 본성을 지키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하며(率性之謂道),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교육이라고 한다(修道之爲教)”는 글귀가 있다. 사람에게 그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 인성이라 할 것이며, 그것을 닦는 것을 도 즉, 인성교육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도, 즉 인성교육이라 함은 위에서 말하는 인성을 잘 드러내도록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인성교육은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 실천 중심으로 강조된 뒤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문화일보, 2015.4.16.)³⁾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부터이며,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 2012년 7월 인성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학교급별 교육목표 및 국어·도덕·사회 등에 배려, 나눔 등 인성교육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현주, 2013 : 30).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구체적인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인성덕목과 교과 핵심 내용을 체계화해 수업에 반영하되, 수업을 협력학습·토론학습 등 학생 활동 및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속에서 구현하도록 하고 그 성과를 동료 평가,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평가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문화일보, 2015.4.16.). 정부는 2014년 3월에 “2014 인성교육 강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대로 추진해오고 있다(현주, 2013 :30).

언론 중에 경향신문은 인성교육을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사회나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민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전례에 유의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인성’교육의 역사를 1938년 총독부령으로 학교에서 인성과 인성교육의 성과를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때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72년 이후 우리나라 유신 때 이것을 사상통제 수단으로 ‘강제’하였다고 하며, 1976년 ‘인성교육’이란 미명으로 이것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고, 민주화 후에도 사회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이 인성의 부재를 사회갈등의 잘못된 원인

요한 성품과 역량’이며 이를 길러주는 것이 곧 ‘인성 교육’이라고 설명했다(문화일보 2015.6.4.).

3) 1995년에는 개인의 창의성과 더불어 집단 지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협력과 상호존중, 배려, 정직 등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인성역량이라고 강조했다(위 문화일보 같은 날자의 내용 참조).

으로 지목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경향신문, 2015.5.16.).

또한 한국일보도 현재의 제정 인성교육진흥법을 일제 강점기의 ‘교육칙어’와 유신시절의 ‘국민교육헌장’에 비교하면서 매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한국일보, 2015.8.6.).

그러나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에 만들어진 인성교육진흥법은 정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여당의 지원을 받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만든 법이 결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에서 본 대로 1995년 이래 학교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된 선례로 볼 때 인성교육을 위와 같이 평가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것이며, 전혀 타당하지 않다. 다만 그 내용 중에는 미처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검토하지 못해 미흡한 내용들이 있으며, 이것들은 향후 보완을 해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이하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과정의 개요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검토 및 심사된 의견과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언급된 내용들과 그 최종적인 결과로서 탄생한 인성교육진흥법 자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3.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과정과 검토 및 심사의견,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

가.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과정과 입법의 의의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과정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동법안은 2014년 5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대표발의인으로 하여 102명의 발의인이 서명하여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전체위원회 2차례와 소위원회 한 차례의 검토 및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같은 해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와 심사를 거쳐,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의 정병국 상임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이 포럼은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안을 상임위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2013년부터 여야 의원 50여 명이 소속된 동 포럼에서 10여 차례 공청회·세미나·간담회를 통해 여론수렴과 구체적인 법안 검토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이 법은 2012년 겨울의 대구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의한 희생 자살 사건과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 인성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범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12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표>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과정

▶ 의안 접수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1910733	2014-05-26	정의화의원 등 102인	제19대 (2012~2016) 제325회

▶ 소관위 심사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5-27	2014-12-03	2014-12-05	수정가결

▶ 소관위 회의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14-12-0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14-12-04	상정/의결(수정가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2014-12-05	상정/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14-12-05	2014-12-24	2014-12-24	수정가결

▶ 법사위 회의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4-12-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 본회의 심의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2014-12-29	2014-12-29	제330회 제3차	수정가결

▶ 정부이송 : 2015-01-09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15-01-20	13004	인성교육진흥법

아무튼 우리가 이 법으로 인하여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18세 이하 인구는 현재 전 인구의 20% 정도이지만, 이들은 우리 미래의 100%이다. 30~40년 뒤에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기는 결과는 폭력, 탐욕, 부패, 무례, 중독, 성추행, 왕따, 괴롭치 등이다. 우리의 미래가 이런 것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역사가 토인비는 '21개의 뛰어난 문명 중에서 19개는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도덕적 쇠락으로 멸망했다'고 분석했다. 아이들의 인성을 잘 가꾸지 못하면 우리의 문명도 쇠락하고 말 것이다(신좌섭 기자, 경향신문, 2015.8. 5.). 인성교육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인성의 덕목들이 사회 전체에 구현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고 살아갈 만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나.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과정상의 검토 및 심사의견과 소관 위원회 회의 내용

인성교육진흥법안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는 2014년 12월 3일과 4일 하루 사이에 전자는 입법조사관에 의해, 후자는 수석 전문위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양자의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내용의 요지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 및 심사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근거법령으로 교육기본법 9조(학교교육)와 13조(보호자), 초·중등교육법 제35조(학교생활기록)등에도 규정되어 있고, 2009년의 초·중등교육과정을 거쳐 2012년도 교육과정 안에도 인성교육 강화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법이 필요한 이유를 나름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행의 법령 내용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하고, 더구나 가정과 사회를 엮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구하면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방법의 개선과 그 소관부처 등에 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IV.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관한 찬성론 대 신중론의 다툼

1. 인성교육진흥법안 심의 미진

인성교육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이 있다. 국회에서는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나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에서의 표결 과정에서 야당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국회 밖에서는 이것의 제정에 관해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매우 드문 일이다.

필자가 실제로 현재까지 한국언론재단 사이트인 카인즈(<http://www.kinds.or.kr>)를 통해 인성교육법 관련 기사 455건을 조회한 결과 이 법안에 찬성을 한 의견보다는 반대를 한 의견이 배 이상 많았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야 정당이 모두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적극 인정하고 상임위에서 3일간의 최소한의 심의만을 거친 뒤, 법사위를 통과함은 물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199명 전원의 동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입법과정상 관련 국회 소관 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해보면 쟁점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집행기구의 별도 설치 여부 등 절차상 혹은 조직상의 몇 가지 점만을 짚고 있을 뿐이다.

이 점을 보면 국회가 이 법이 소위 이준석 방지법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걸 맞는 점만을 보았을 뿐, 이 법안이 미칠 교육적 영향에 관해서 좀더 깊이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⁴⁾

4) 경성일보도 이점 마찬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 인성교육진흥법이 어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과연 인성이란 것이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없이,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6개월 전 통과됐다. 분위기에 편승해 급조한 법이요, 도덕과 법률을 혼동한 소위 '그랬으면 좋겠다' 법이다(이하 경성일보, 2015.5.18. 참조). 그러나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의 상임대표인 정병국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5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인성교육의 사교육화와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성포럼 차원에서 법 제정을 위해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시행령 제정을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교육현장 전문가와 사회 각계 각층 7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에 반영했다고 한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인성교육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여름 5회째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정병국, 인성교육진흥법, 국가 대개조의 방향타 왜야, 경인일보, 2015. 7. 21) .

뒤에서 보겠지만 사실은 이 법안은 교육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법이며, 개선해야 할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이다. 이하에서는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 여부에 관한 찬반 양론을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2.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찬성론

많은 사람들이 인성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가.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필요성

2014년 6~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1만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본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또한 가장 높는데, 응답자 중 30%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았다고 한다.⁵⁾ 위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42.7%는 학교 성적이 떨어진 점을 들었고, 24.2%가 가족 간 갈등을, 11.1%가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을 꼽았으며, 기타 20.1%로 나타났다고 한다(국민일보, 2015. 5. 1).

스트레스 지수 조사에서도 학업 문제가 67.2%로 가장 높았고,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이 50.5%로 뒤를 이었다고 한다.⁶⁾ 특별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자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문제는 가정이 청소년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

5) 2015년 9월 9일자 경기일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생 2천명이 자살위험군이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9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3.5%인 1만7천267명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치 3.2%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검사받은 학생 가운데 1.9%인 9천484명은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기관의 검사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우선 관리군으로 분류됐으며, 또 우선관리 학생 중에서도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학생은 2천173명(0.4%)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 조사는 초등생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초중고생 전수조사가 이뤄질 경우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은 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짓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7년 동안 자살한 학생이 1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 초 발간한 보고서도 우리나라 아동(0~17세)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유엔아동기금(UNICEF) 조사 대상국가인 29개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16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실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찾아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self-esteem)을 높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제 모든 관련 기관들과 종사자들은 이 법에 의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라 한다.

나. 학력 제고에의 도움

어떤 사람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성교육이 학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아키타현은 2007년 문부과학성이 43년 만에 부활, 실시한 일본 47개 전 지역 중 학력평가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08년에도 전국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집단따돌림과 교내폭력, 학생과 교사의 갈등 문제 등을 최소화하는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이 신문은 아키타현을 교육강국 핀란드에 비유하면서 아키타의 교육정책을 분석, 히가시나루세촌 학교의 성공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아키타현의 히가시나루세촌 학생들은 지나가는 차량에 까지 인사를 한다. 처음 보는 낯선 행인에게도 인사와 미소를 지으며 밝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뛰어 놀고 또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이며 맞벌이하는 부모를 도와 가정생활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신문은 히가시나루세촌 성공의 핵심 키워드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열정적인 선생님과 낙오자 없는 학생 교실, 학생 한 명을 위한 마을 전체의 노력, 더불어 사는 교육철학의 체득 및 예의범절 교육 강조를 들고 있다(학력평가 일본 1위의 시골마을, 강원일보, 2015. 5. 13).

다. 예절 교육의 필요성

대구교대 장윤수 교수는 인성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예절 교육의 필요성에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예절이란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오랜 생활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양식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생활규범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예절은 시대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성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고양시키고, 타인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예(禮)의 근본정신이라고 한다.

금년 1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중심덕목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강조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특히 ‘예’라고 하

는 것은 나머지 덕목의 의미를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예절교육이야말로 가장 대표적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대사회와 예절문화, 자신의 삶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삶 먼저 이해·배려해야, 영남일보, 2015. 7. 20).

라. 함께 발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요성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의 상임대표인 정병국 의원은 인성교육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인성교육 관련 법으로 평가하며, 이 법은 국가의 대 개조를 위한 방향타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방향은 부모님에 대한 효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친구 간의 우정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며, 질서와 배려로 사회 공공선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람 됨됨이의 기본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한다(정병국, 인성교육진흥법, 국가 대개조의 방향타 돼야, 경인일보, 2015. 7. 21)

언론 중에는 가정과 초·중·고 시절에 주로 이루어지는 인성(人性) 교육은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대학 교육을 마친 후 사회에 적응하고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들 중에는 의외로 우리가 선망하는 대학 출신의 고학력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들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는 종종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큰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함께 발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유지해나가는 근본이 구성원의 학력이 아닌 인성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한다(새진북신문, 2015.9.14.).

아동복지포럼의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정창우 교수도 “인성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강조돼 왔다”며 “우리의 운명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성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일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문화일보 2015.6.4.)

마.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 교육으로의 이행의 결과

언론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계에 부는 인성교육 바람은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고 한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키우는 '개발도상국형' 교육에서 모두가 어우러지는

18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선진국형'으로 교육의 방침이 옮겨오고 있다는 것이다. 공부만 잘하고 혼자 잘난 사람보다 학습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관계성이 우수한 인재를 더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도 이러한 교육의 변화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국제신문, 2015.5.11.)

바. 인성교육진흥법 여론 조사의 반영

인성교육법 제정이 한국 교육의 올바른 방향임은 2014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다고 한다(이하 안양옥, 인성교육, 이제 실천할 때다, 한국경제, 2015.9.1. 참조).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 '높다'는 응답이 5.0%, '낮다'는 응답이 61.3%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모두 '인성교육'을 1순위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침해, 보수(保守)교육 카르텔 공고화, 사교육 양산 우려와 실효성 부족'을 내세워 인성교육진흥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취지와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바람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3.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신중론 혹은 반대론

가. 인성교육 그 자체의 문제점-인성과 인성교육의 본질 무시

인성은 시간을 두고 다듬어야 하는 훈육의 영역이지 속성 효과가 나타나는 교육의 범주에 애당초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인성은 일시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그릇에 담아 나가는 '체화' 교육이다. 이러한 산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교사,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습득해 나가는 것이어서 어른들이 먼저 올바른 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인성교육진흥법, 제대로 시행해야, 서울신문, 2015.7.31.).

바른 인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그 잠재적 교육과정인 우리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한다.

맹모(孟母)가 삼천지교(三遷之教)를 한 것도 인성이 어떤 특정한 형식의 교육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인성을 놓고 국가

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김승환 교육감, 인성교육진흥법, “국가가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돼!”, 전북도민일보, 2015.7.20.)

인성 형성은 철저히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라 한다. 특히, 개개인의 인성은 특정할 수도 없고, 통일·획일화 시킬 수도 없는데, 이 법은 사실상 인성교육 진흥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전체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다.

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인성의 본질에 대한 교육 당국의 무지를 들고 있다(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세 가지 이유, 서울신문, 2015.8.4.)

인성이 몇몇 제한적 프로그램으로 함양되리라고 믿는 교육 당국의 처사는 기만적이기까지 하다고 하면서, 그런 신통한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가 반문한다. 인성은 물길질 몇 번에 쭉쭉 자라나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며, 오히려 거친 황야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버텨 내는 야생초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조성호,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세 가지 이유, 서울신문, 2015.8.4.)

나. 기존 교육과정의 부정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법’이 없어서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조재윤, 인성교육, 법으로 한다?, 대전일보, 2015.7.29).

2012년 심각해진 학교폭력 문제로 제기되어 작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힘을 받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관점은 인성교육의 부재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인성, 교육 그리고 법, 경향신문, 2015.7.24). 그러나 비판론은 법 적용에 앞서 정말로 인성교육 부재가 문제의 핵심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미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홍익인간’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도덕과를 포함한 여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충분히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상(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만 잘 구현되도록 정상화한다면 별도의 인성교육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문제는 인성교육 시간이 부족해서 빚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온 나라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면, 법으로 제도화할 것이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담

20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아내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인성교육, 법으로 될까, 경기일보, 2015.8.5.).

다. 인성 평가 그 자체의 문제

경향신문은 “네 인성은 몇 점짜리니?” 라는 인성교육진흥법 반대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이하 경향신문, 2015.5.16 참조.) 이 신문은 ‘인성도 평가가 될까’, “누가 ‘당신 아이의 인성은 60점’이라고 얘기하면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부는 금년 초 대통령 보고에서 인성교육 강화 및 대입 반영 확대를 2015년 주요 업무과제로 제시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이에 호응하여 2017학년 입시에 보육·사범대학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인성 발달사항을 핵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대학협의회도 2017학년 입시에서 인·적성을 평가하는 ‘비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5464명(38개교)으로 2016학년 1845명(21개교)보다 196%나 늘리기로 했다. 대입 수시모집에 ‘인성 면접’을 신설하기로 한 대학도 등장했다.

인성평가 바람을 타고 기업들도 채용 때 인성을 반영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경험을 말해보라’는 등 인성 관련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한다.

인성을 입시 및 평가와 연계하겠다는 정부방침은 사교육시장을 벌써부터 요동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 업체 등이 교육부 인증을 받기 위해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실천 인증 급수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 학교나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외면

인성교육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대구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가해학생들의 인성을 문제 삼으면서 2013년 1월 창립된 국회 인성교육실천 포럼에 의해 예방 대책으로 부각된 것이며,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에서의 이준석 선장의 무책임한 행태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2014년 5월 인성교육진흥법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입시경쟁, 경제 악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학교폭력, 증오범죄 증가는 물론 노동력 저하까지도 개인의 인성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비판론의 또다른 핵심이다(인성, 교육 그리고 법, 경향신문, 2015.7.24)..

극악무도한 폭력이 일어나도, 패륜적인 범죄가 발생해도, 심지어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가 터지고, 조직의 뿌리 깊은 불법 관행이 불거져도, 그 사람의 인성문제로 귀결시키는데.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숨은, 혹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회, 조직, 제도, 구조의 문제를 쉽게 덮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부산일보, 2015.7.15).

협력보다는 경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체제와 입시제도⁷⁾, 곧 어른들이 만든 문화와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더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런 핵심 원인을 외면한 채 문제를 개인의 인성의 탓으로만 돌려 인성교육 강화라는 해결책을 서둘러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인성, 교육 그리고 법, 경향신문, 2015.7.24.).

정운찬에 의하면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어른들이 보여준 인분 교수, 땅콩회항, 매 값을 주고 사람을 구타하는 재벌 2세, 수시로 발생하는 사회지도층의 성추행 사건과 불공평한 법 적용은 인성교육 내용과 어긋난다. 현실과 교육의 괴리다. 괴리가 매워지지 않는 한, 또 다른 이준석의 등장은 필연적이다.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를 비정상이 발붙일 수 없는 정의로운 사회로 바꿔야 한다(정운찬, 인성교육, 법만으로는 안 된다. 이투데이, 2015.8.12.).

마. 지식 위주의 인성교육

인성교육진흥법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간됨의 가치를 지식 위주로 배우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이하 경상일보, 2015.5.18. 참조).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든 5점 척도의 인성평가 자가진단서의 문항을 보면 인성교육이 체험과 통찰이 아니라 머리로 판단하게 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지식의 평가를 통해 착해 보이게 만드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착하게 변화시켜 주는 일은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정병진 칼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한국일보, 2015.7.22.) ‘맹모삼천지교’에서 맹자의 어머니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체험의 영향력을 잘 알았던 셈이다(이계삼, 한겨레, 2015.8.10.)

이 시대에 필요한 인성교육은 학교 현장이나 사교육현장에서 일부러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인 어른들이 제대로 인성을 삶에서 보여 주는 것이다(인성교육진흥법이 능사만은 아니다, 부산일보, 2015.6.7).

7) 인성교육의 전제는 입시지옥 철폐이다(한겨레, 2015.3.3).

22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바. 직업 윤리교육의 소홀

세월호 선장은 인성교육이 아니라 직업 윤리의 결여가 문제였다고 한다. 직업정신과 직업윤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사회적 덕목을 인성'으로 착각하게 하고 그것을 기어이 법으로 만들어 진흥하겠다면서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인성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직업교육이라 한다. 경찰은 경찰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행동하는 과정에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인성이 고양되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직업교육이야말로 윤리사회의 원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근대적 의미의 인성교육이라는 것이다. 유교적 충효나 순종의 미덕을 인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병진 칼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한국일보, 2015.7.22.). 유교적 인성이 아니라 시민적 직업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 어른들의 책임 회피

인성교육진흥법이 목표로 제시한 8대 가치는 예절 효행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세월호 참사를 되돌아보면 누가 인성교육의 대상인지 분명하다고 한다. 당시 배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러한 인성이 부족하여 참사를 당했던 게 아니며, 배 밖에 있었던 어른들이 이러한 인성을 팽개쳤기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길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수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굳이 계속 시행하려 든다면 인성교육 대상자의 초점을 청소년이 아니라 교사와 어른에게 맞춰야 한다고 한다(정병진 칼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한국일보, 2015.7.22.).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에 정직, 정의, 책임 같은 덕목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아이들이 어떤 인성을 갖출지는 어른들에게 달렸다고 한다(신좌섭 기자, 인성교육, 중요한 것은 롤 모델이다, 경향신문, 2015.8.5.).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할 뿐이다. 과연 먼저 사람이 돼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맑디맑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누가 문제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이다(장재건, 먼저 사람이 되자, 국제신문, 2015.6.5.).

아. 예상되는 별무 효과

사람의 성품이 인성프로그램 한두 개 쯤 들었다고 해서 쉽게 변화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총기사고가 잦았던 1994년 미국에서 비슷한 연방법이 제정됐고 많은 주정부들이 이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학교개선법’이란 명칭을 사용했지만 우리의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10여년 시행한 후 2010년 연방정부 보고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은 성과가 없었다고 하며, 이후 시행은 호지부지됐다는 것이다(정병진 칼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한국일보, 2015.7.22).

그리 먼 과거로 가지 않고 최근에 시행된 교육정책을 살펴보다라도 인성교육의 강조가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 생긴다고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그대로 둔 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등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난무하면서 실적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교사들은 서류와 씨름하고 시간에 쫓기며 힘들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기존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인 계획서와 부풀린 실적으로 평가만 받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인성교육진흥법이 능사만은 아니다, 부산일보, 2015.6.7).

인성교육은 본질적으로 지식교육처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지식은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인성 덕목은 복잡하고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인성 덕목은 주지(主知) 교과와 지식처럼 간단명료하게 가르칠 수 없다. 그것은 미술·음악·체육과 같은 주정(主情) 교과와 실천 능력처럼 오랫동안 자유롭게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성도 교육으로 강제 육성...평가도 교사가?, 헤럴드경제, 2015.7.21.)

자. 기본권 침해

“인성교육은 입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 이 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토론·밥상머리 교육으로 존중·배려 키운다. 국제신문, 2015.7.22.). 인성교육진흥법이 편향적인 인성 덕목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보수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을 육성하려고 하는 편향된 정책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토론·밥상머리 교육으로 존중·배려 키운다. 국제신문, 2015.7.22.)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 헌법학계에서는 이것을 국민들의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저항권의

24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간접적 선언이라고 해석한다. 인성교육진흥법상의 핵심덕목과 가치에는 이러한 민주시민 정신을 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차. 국가와 사회 순응적 국민 양성

인성교육진흥법은 그 목적을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성교육이란 명목 아래 국가에 순응하는 국민을 '육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장재건, 먼저 사람이 되자, 국제신문, 2015.6.5).

과연 이 법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창의력과 협업능력, 도전정신이 요구되는 21세기에 예와 효를 앞세우는 것부터가 수상쩍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성을 항목별로 평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랑'과 '훈육'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른들의 억압과 규제에 대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반항하고 정당하게 문제제기하는 것까지 봉쇄하겠다는 뜻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한다(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 아이들은 어디로, 한겨레, 2015.6.10.)

교육을 통해 인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의도가 어쩐지 불편하다는 것이다(부산일보, 2015.7.15). 인성을 다듬는다는 것이 그 순수한 의미를 넘어 사회의 제도와 규율이 요구하는 틀에 맞는 인간형을 양성하겠다는 의욕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한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길러내기 위해”(제1조)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시민'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이계삼, 한겨레, 2015.8.10.) .

카. 인성교육진흥법 관련 여론조사

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9월 11일 교육과정 개정, 역사 교과서, 한자 병기 등에 대해 전국 초·중·고 교사 9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현장 교사 60% 이상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매일경제, 2015.9.11.) .

7월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48.3%로 절반에 가까웠다. 매우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은 0.9%, 약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20.8%에 그쳤다. 역효과를 우려하는 의견도 29.7%나 됐다(“현장 교사 60% 이상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매일경제, 2015.9.11.) .

V. 인성교육진흥법상의 핵심 가치·덕목 내용의 문제점

1. 윤리쪽에 치우친 핵심가치와 덕목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는 인성교육과 그 핵심가치와 덕목, 핵심역량에 관해 정의를 하고 있다.

이에 이하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그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아울러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이 가운데 인성교육의 정의나 핵심역량의 경우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 관점에서 정의를 잘 내리고 있다.

문제는 제2호 핵심가치·덕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법은 그 덕목과 가치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들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으로 민족 고유의 정신을 승계하여야 하며, 인성교육법의 취지는 민족 고유의 정신인 충효, 인의예지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인성교육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실시한 티처빌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설정한 인성교육의 목표 중에서는 배려(28,1%)와 예(24,4%)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이가 많았다고 한다. 이어 존중(15,3%), 책임(9,2%), 소통(8,9%)이 뒤를 이었다 한다(교사 75,3%, "인성교육진흥법 잘 모른다. 매일경제, 2015.5.2.).

필자가 처음에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참 수긍하기 어려웠다. 누가 감히 덕목과 가치를 이렇게 한정할 수 있는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 했는데, 그것이 핵심가치와 덕목이라면 바로 법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덕목하고도 통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26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통하는 것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너무 윤리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쏟아졌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조항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조항의 표현을 잘 보면 여기에서 열거한 8가지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그밖에도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의 ‘등’자를 붙였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것들은 하나의 예시이며 그밖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시이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대부분 이것이 전분인 줄로 알고 다른 것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들은 분명히 예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꼭 포함시키려 한다. 그래서 심각하다.

우선 이것들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2. 인성의 범위에 대한 매우 좁은 정의

인성은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고 하면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는 8가지 핵심가치(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는 인성의 범위를 매우 좁게 정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인성교육, 법으로 될까, 경기일보, 2015.8.5.). 인성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건전한 인격을 가진 개성 있는 존재로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지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인교육’이고, 교육 본래의 가치라고 한다.

3. 봉건시대 인성교육과 같은 수구적 가치와 덕목

첫째, ‘권리’는 없고 ‘책임’만 규정하여 마치 봉건시대 인성교육 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한겨레, 2015.8.11.). 학부모 중에는 “아이들을 숨 막히는 경쟁 속에 몰아넣고 다른 친구들을 밟고 일어서라고 한 게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서 이제는 ‘착해야 한다’는 덕목까지 요구하나요?”라고 문제제기를 한다고 한다.

이 법상의 인성 덕목인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여덟 가지에 대해서 심정보 부산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이 덕목들은 수구적인 규범들”이라며 “‘배려’가 있다면 ‘공정성’이, ‘책임’이 있다면 ‘권리’가 함께 나와야 한다. 부모가 보여줘야 할 사랑인 ‘자’(慈)에 대한 전제 없이

‘효’(孝)를 앞세우는 것도 복종의 도덕만을 요구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조건 정직하기만 하면 ‘착한 시민’이 될 뿐 ‘정직한 시민’은 못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은 봉건시대 권위적인 방식으로 수구적 규범을 강조하는 법처럼 느껴진다”고 했다(한겨레, 2015.8.11.).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제정 인성교육진흥법은 효, 책임과 같은 전통적인 개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다(정운찬 칼럼-인성교육, 법만으로는 안된다, 이투데이, 2015.8.12.) 개인적 가치만으로는 희망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둘째, 정부에서 발표한 인성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절, 효도, 정직 등 과거 ‘삼강오륜’ 내용이 절로 떠오른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는 전통적 공통 가치의 붕괴보다는 개인의 인격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이 단순한 예절교육으로 끝난다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교육으로 아이가 착해질 수 있다면-인성교육진흥법, 그 실효성, 경향신문, 2015.9.1.).

4. 국가에 복종하는 방향으로의 온순한 덕목으로의 일관

인성교육이 국민교육헌장처럼 국민의 인성을 국가에 복종하는 방향으로 길들이는 데 쓰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신좌섭 기자, 경향신문, 2015.8.5.). 인성교육이 예의, 효도, 시민성, 성실 등 온순한 시민으로서의 덕목에 치중할 것에 대한 걱정이다. 바른 인성에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독재에 피로 항거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거나, 업무현장에서의 비리를 드러내고 고치는 용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신좌섭 기자, 경향신문, 2015.8.5.).

한국교육개발원의 한 연구는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덕목으로 ‘예의, 정의, 책임, 자기존중, 시민성, 배려·소통, 정직·용기, 지혜, 자기조절, 성실’을 제시하고 있다(신좌섭 기자, 경향신문, 2015.8.5.).

5. 교육당국의 산만한 욕심

교육 당국의 욕심이 지나치다 못해 산만하기까지 하다는 지적도 있다(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세 가지 이유, 서울신문, 2015.8.4.) 이 법에서 강조하는 인성 덕목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이다. 하나씩 뜯어 보면 모두 소중한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왜 효는 있되 충(忠)은 없으며, 책임은 있되 자율은 없는지, 또한 봉

28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사와 희생은 중요한 인성 덕목이 아니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중구난방이 되기 십상이다. 물론 법 제정 전에 정책 연구도 했을 것이며 전문가 공청회도 했을 것이다. 그래도 이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다.

6. 인성 개념의 확장 필요

인성의 개념에 대한 확장성이 요구된다고 한다.

가. 전통적 공통 가치보다는 개인의 인격과 다양성 추구의 필요성

이제는 전통적 공통 가치보다는 개인의 인격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의 지배적인 기준에 순응하고 따르면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이 단순한 예절교육으로 끝난다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교육으로 아이가 착해질 수 있다면-인성교육진흥법, 그 실효성, 경향신문, 2015.9.1.)

나. 시민교육의 가치와 덕목 필요

인성교육보다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인성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절, 효도, 정직 등 과거 ‘삼강오륜’ 내용이 절로 떠오르는 게 사실이에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안이 만들어졌다면 인성보다는 시민교육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배려하고 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민교육 말이죠.”(교육으로 아이가 착해질 수 있다면-인성교육진흥법, 그 실효성, 경향신문, 2015.9.1.)

심성보 교수는 지금 시대에 맞는 인성교육은 다름 아닌 ‘시민적 인성교육’이라고 강조한다. “최근에 영국에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졌다”며 “해외에서는 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치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규범과 공동체 덕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성을 함양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한겨레, 2015.8.11.).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I’ 가운데 독일 학교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독일 함부르크시에 있는 펠링거 초등학교에는 ‘여러 학년이 혼합된 학습그룹’이 있다.⁸⁾ 학생들은 이런 학

습형태 속에서 상호협력과 공동체적 역량, 책임의식, 자립적 태도 등을 함양한다. 이 학교에는 1999년 ‘아동회’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학생회도 있다. 학습그룹의 대표가 학생회의 회원이 되는데 학생회 회원들은 매일 있는 학습그룹 아침 모임에서 학교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과 경험을 듣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생회에 전달해 다시 논의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계획 수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공동체적 역량과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간다(한겨레, 2015.8.11.).

심 교수는 “지금 시대 아이들은 ‘인성’과 ‘시민성’이 융합된 존재로 길러야 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적 요소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내면화’라며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법을, 시·도 차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어 시민교육과 결합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연주 의원안, 2015.1.22), 남인순 의원안, 2015.2.5)이 발의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한겨레, 2015.8.11.).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현재의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사회적 가치 교육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정 인성교육진흥법은 효, 책임과 같은 전통적인 개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다(정운찬 칼럼-인성교육, 법만으로는 안된다, 이투데이, 2015.8.12.) 개인적 가치만으로는 희망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부족하므로, 민주국가 시민으로 당연히 가져야 할 자유와 정의, 인권, 공동체 의식 같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교육해야 인성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한다.

한국교총도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으로 예(禮)·효(孝)·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이 제시돼 있으나 여기에 더해 사회공동체적 의식이나 세계시민정신 등 인성교육에 대한 광의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안양옥, 인성교육, 이제 실천할 때다, 한국경제, 2015.9.1.).

8) 이 그룹에는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속해 공동으로 학습을 한다. 3개의 학년이 하나의 그룹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변동이 적고 동일한 학생들이 장기간 함께 학습할 수 있어 모든 학생이 한 학습그룹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다. 처음에는 주로 도움을 받던 아이들이 이후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성장한다.

VI.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인성평가 입시 반영 문제

1. 대학입시에의 인성 평가 반영 계획 보고

교육부는 지난 1월에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입시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우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입시에 인성을 반영한 일반 대학들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헤럴드 경제 2015.1.22.). 해당 사업의 교육부 지원액은 20억~30억 원 규모다. 이에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통해 인성평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올부터 인성평가 大入전형 반영 더 늘어날 듯, 문화일보, 2015.4.16.).⁹⁾

2.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열풍과 입시 반영시 평가기준 마련 가장 큰 고민

오는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인성교육 열풍이 불었다. 대학들도 인성교육을 학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

9) 서울시립대의 경우 인성면접용 문항을 개발했다. 2014학년도 입시부터 수시모집 전형에서 인성평가를 반영하는 서울시립대가 공개한 문항을 보면 조별 수행평가를 할 때 조원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괴롭히지 않은 친구로부터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사과문을 써야 하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등이다(이하 올부터 인성평가 大入전형 반영 더 늘어날 듯, 문화일보, 2015.4.16.). 서울여대는 2014학년도 인성평가가 적용된 수시전형으로 정원의 58.7%를 선발하기로 했다. 서울교대의 경우 면접 평가지표 항목을 인성(공동체의식, 학교생활의 성실성, 역경 극복, 타인 배려), 다문화역량(개방적 태도,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코칭역량(지원동기, 리더십), 문제해결역량(학업성취도, 교직 관련 활동 다양성 및 우수성, 비판적 사고, 창의성), 소통역량(의사소통능력, 태도) 등으로 구성했다. 동아대 부산가톨릭대 신라대 등 지역대학들도 학생부 전형에 인성평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올해 입시는 인성에 방점을 찍었다(이하 부산 올해 대입 변수는 인성평가...학생부 전형서 비중 크게 늘려, 국제신문, 2015.5.11.). 부산외대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고교생활우수자 전형, 글로벌인재 전형 등 인성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신설했다. 동아대와 부산가톨릭대는 올해 대입에 인성면접을 신설했으며, 부산대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요소를 바꿀 예정이었다.

고자 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입전형에서도 인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인성' 평가를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것이 2016 학년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뻔하였다. 하지만 인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가 과제였다. 부산가톨릭대 원성현 입학홍보처장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서류만 들여다보기보다 면접시간을 배로 늘리며, 상황을 던지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는 등 다양한 면접방법도 모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부산 올해 대입 변수는 인성평가... 학생부 전형서 비중 크게 늘려, 국제신문, 2015.5.11.).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왕따'에다 사이버 폭력까지 더해지고 있어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인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7월부터 인성교육이 필수로 시행되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이하 올부터 인성평가 大入전형 반영 더 늘어날 듯, 문화일보, 2015.4.16.). 이 교사는 "협력학습·토론학습 강화, 학습과정의 평가 반영 등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방법은 과거에도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인성교육이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입시 등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또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학생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새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핵심인성 요소에 예절·효·정직·책임·소통이 추가됐다고 한다. 기존의 요소에는 배려·나눔·협력·타인존중·갈등관리·관계지향성·규칙준수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잘 쓴 '학생부' 하나, 열 과외 안 부럽다... 2015 학생부 기재요령과 주의점, 경향신문, 2015.4.8).

학교 담장 밖의 기업들의 세상에서도 4지 선답형 시험 성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닌, 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면 사범대 시험에 인성 점수를 반영한다고 해놓고 과거처럼 윤리수업을 받고 나서 시험 100점 받으면 인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풀어가야 할 기업들의 숙제였다는 것이다(새전북신문, 2015.4.26.).

3. 사교육시장의 인성교육 열풍

어린이 요가, 훌놀이, 오카리나 배우기, 요리교실, 국악 배우기... 지난해 교

32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육부에서 인증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 일부다. 교수안에는 요가 인사법으로 예절을 배우고, 오카리나 연주로 재능 기부를 접하면서 ‘인성’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네 인성은 몇 점짜리니? 자격증·시험 213종에 사설 교육기관 급증... 상품이 되어버린 ‘인성교육’, 경향신문, 2015.5.16.)

5월 15일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인성 관련 자격증 및 자격시험은 213종에 이른다. 지난해 4월 60여종에 불과했던 인성 관련 자격증이 1년여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인성교육 미술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 스피치 교육 등의 사설 프로그램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국학원에서는 야외 극기훈련, 서바이벌 전쟁 체험 등을 골자로 한 ‘독립군 체험’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다(네 인성은 몇 점짜리니? 자격증·시험 213종에 사설 교육기관 급증... 상품이 되어버린 ‘인성교육’, 경향신문, 2015.5.16.)

이영숙 한국성품협회 대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법이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교육시장에서 기존 프로그램에 ‘인성’만 붙여 마치 교육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사교육시장만 들쭉일 뿐 아무런 효과도 없다. 생각하는 법을 키우기 위해 한때 ‘독서교육’이 유행했지만 아이들에게 줄거리만 달달 외우게 하고 생각하는 힘은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는데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성이라는 게 사람 됨됨이를 바꾸는 건데 사교육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네 인성은 몇 점짜리니? 자격증·시험 213종에 사설 교육기관 급증... 상품이 되어버린 ‘인성교육’, 경향신문, 2015.5.16.).

4. 인성 평가 입시반영의 문제점

가. 인성교육법 본래 의도의 왜곡

인성교육을 입시에 반영하였다는 것은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마음이 행복하고 꿈이 있는 아이들이 ‘왕따다’ ‘자살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런 일탈을 막고 건강한 아이들을 기르자고 만든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이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인성이 스펙이 되고 점수로 매겨지고 인성교육을 받는 학원이 생기고... 개그 같은 일이다. 이대로 간다면 인성교육은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박상현, 人性을 점수로 매기겠다니, 국제신문, 2015.5.18.). 인성교육에 점수를

매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왜곡된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전인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점수 때문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병드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오로지 성적에 목을 매니 생기는 문제다. 그 점수병을 해소하기 위해 또 점수를 매기겠다니 어불성설이다(박상현, 人性을 점수로 매기겠다니, 국제신문, 2015.5.18.).

나. 인성교육법 취지와 목적의 실패

인성교육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측정의 대상이 되고, 점수화 된다면 우리는 이 법이 미봉책으로 끝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김승현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인성교육 진흥법, 경기일보, 2015.6.15.). 인성면접을 대비하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김승현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인성교육 진흥법, 경기일보, 2015.6.15.).

5. 국회와 교육계, 언론의 부정적 여론의 비등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6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인성은 교육될 수 있지만 측정될 수 없다”며 “한 사람의 인성이 다른 사람의 인성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점수를 매길 수 없으며, 학생이나 선생님 개인이 평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손지은 기자, 아시아투데이, 2015.6.4.).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해 “인성교육에는 정답이 없으며 획일적 방법 대신 교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손지은 기자, 아시아투데이, 2015.6.4.). 인성이 본질상 복잡하고 불확정적이므로 계량화해서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다(김주성, 人性교육법 시행, 과잉의욕 경계해야, 문화일보, 2015.7.2.). ‘인성교육진흥법’은 학생들을 평가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인성함양을 기본으로 하며, 학교 교육의 목표와 계획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인성도 교육으로 강제 육성…평가도 교사가?, 헤럴드경제, 2015.7.21.).

6. 인성평가의 입시 반영 계획 취소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학입시 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

34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다는 계획은 위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백지화 됐다(남라다 기자,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대입 인성평가는 없던 일로”아시아투데이, 2015.7.14.)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21일에 공포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종합계획을 토대로 각 시·도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교육부는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차관과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셋째, 인성교육을 할 교원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연간 4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연수 방법을 다양화 해 연수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부실 양성 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지정 요건 역시 강화한다(남라다 기자,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대입 인성평가는 없던 일로”아시아투데이, 2015.7.14.)

넷째, 그동안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입전형에서의 인성평가 도입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대입전형에서 별도의 전형요소로 하거나 계량화해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남라다 기자,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대입 인성평가는 없던 일로”아시아투데이, 2015.7.14.)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 반영하려 하였던 계획을 밝히자 일선 학교와 언론에서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센 비판이 일어났고, 국회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교육부가 마침내 이를 수용한 것이다(남라다 기자,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대입 인성평가는 없던 일로”아시아투데이, 2015.7.14.)

인성교육과 관련한 민간 자격증도 학교생활기록부나 대학 제출용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고 대입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면접평가에서 인성을 대학 자율로 종합 평가할 수는 있지만 수험생의 인성 수준을 개별 평가해 입시 결과에 중점 반영할 수는 없도록 하였다(김희원 기자, 정부 공들인 인성교육법 ‘빛 좋은 개살구’ 되나, 서울경제,

2015.7.14.).

다섯째, 시행령은 또 교사와 예비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의무화했을 뿐 초·중·고교 학생들의 의무 인성교육 시간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현 교육과정에 인성 교육이 정규 교과목 등으로 포함되지 않은데다 수업 시간이 정해질 경우 담당 교원을 확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 전면 확대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내로 초·중·고교별 인성 교육 기준과 내용 등을 담은 시행 규칙을 발표해 각 학교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김희원 기자, 정부 공들인 인성교육법 '빛 좋은 개살구' 되나, 서울경제, 2015.7.14.). 그러나 "개별 학생의 인성에 대한 평가는 없을 것이고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이뤄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인성도 교육으로 강제 육성... 평가도 교사가?, 헤럴드경제, 2015.7.21.) .

7. 인성평가 대입 반영 해프닝의 영향 검토

가. 불안한 대입 반영 취소 계획

교육부가 그 말 많던 인성평가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조변석개(朝變夕改) 교육 방침에 이골이 난 학부모들은 긴장을 풀 수 없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마당이다. 학생 인성 교육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법의 골자다. 현 교육부 장관보다 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장관이 다시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황수정 논설위원, 아이들 '바지저고리' 만드는 오리무중 교육, 서울신문, 2015.7.22.) .

인성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나 대학입시 전형요소로의 반영은 인성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평가나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교총, 인성교육, 이제 실천할 때다, 한국경제, 2015.9.1.).

나. 고교에서의 인성교육 사실상 폐기

세월호 사태 이후 처음으로 등장했던 인성교육진흥법이 이처럼 후퇴한 것은 인성교육이 성과 위주의 평가가 되거나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세간의 우려와 각 개인의 인성 수준을 측정할 지표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고민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인성교육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게 되는데다 차기 교육과정인 '2015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서도 강화

36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방안이 빠져 있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희원 기자, 정부 공들인 인성교육법 '빛 좋은 개살구' 되나, 서울경제, 2015.7.14.). 한 학교 관계자는 "강제성이 사라진 만큼 대입을 앞둔 고교의 인성교육은 사실상 실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김희원 기자, 정부 공들인 인성교육법 '빛 좋은 개살구' 되나, 서울경제, 2015.7.14.)..

다. 식지 않은 사교육 열풍

요즘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은 절실한 문제다. 인성평가의 입시 반영 철회를 발표했지만 학원들은 문 닫을 것 같지 않다. 미련이 남았는지 교육부는 앞으로 교대와 사범대 입시에서는 인성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비친다(황수정 논설위원, 아이들 '바지저고리' 만드는 우리무중 교육, 서울신문, 2015.7.22.). 대학들도 인성항목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입시에 반영할 소지가 크다. 인성 관련 내용을 강화한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여전한 데다 면접에서 인성을 평가하는 것도 여전히 대학 자율로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한번 분'인성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있다.¹⁰⁾ 교육부는 올해 초 인성평가가 대입에 반영된다고 했다가 얼마 전, 말을 바꿨지만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입에서 면접 등이 반영되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 강제인 상황에서 '인성'을 대중 보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피치학원' 등을 기웃거리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한국일보, 2015.7.6.). 현재로선 대입 반영을 안 할 거라고 전면 부인했지만 뇌관이 되는 '대입 전형'에 따라 시한폭탄 터지듯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한겨레, 2015.8.11.).

10) "인성(人性)도 바꾸어 줄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착하게 변화시킬 순 없죠. 그렇지만 착해 보이게 할 순 있죠." "대학 입시 대비 인성 면접 준비도 해 주나요?" "그럼요. 대학별 인성 면접 기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훈련시켜 줍니다." 인성 전문 사교육 학원에선 요즘도 이런 상담 문의가 잦다고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더욱 그렇다고 한다(여의춘추-김준동, 人性까지 과외로 하나, 국민일보, 2015.7.24.). 일부 사립대는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 전형에서 인성과 관련한 항목들을 별도 평가해 반영하기로 했고, 성낙인 서울대 총장도 '선한 인재상' 양성을 위해 입시 면접에서 인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여의춘추-김준동, 人性까지 과외로 하나, 국민일보, 2015.7.24.).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인성 면접 요령을 가르치는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최대 수백만 원까지 하는 개인 과외에선 표정, 걸음걸이부터 착하게 보이는 법까지 가르친다고 한다. 인성 교육 지도사 같은 자격증도 만들어졌다. 민간 자격증만 올해 생긴 100개를 포함해 현재 250여 가지에 이른다.

라. 교육부의 뒤늦은 진화

뒤늦게 진화에 나선 교육부는 일단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관련 실태조사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인성평가의 대입반영 백지화를 분명히 함으로써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교대·사대 입시 인성평가 반영 백지화, 세계일보, 2015.7.15.)

교육계 전문가들은 인성교육이 보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시에 직결되는 인성평가보다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인성교육 연계 방안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올부터 인성평가 大入전형 반영 더 늘어날 듯, 문화일보, 2015.4.16.).

Ⅶ.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외주화 문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학교가 담당하는 외에 외부에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른바 외주화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외주화는 크게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외주화의 형식과 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운용의 외부 위탁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는 ‘인성교육 지원 등’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되, 그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

38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으며, 교육감은 그 내용과 계획을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는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서 일차적인 외주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운용의 외부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와 그 내용

제정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라 하여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자등”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장관은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

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장관은 인증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2차 외주화는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자등"에 대한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과 기 인증 업무의 외부 위임이라는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외주화의 실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위탁하거나 프로그램 인증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사교육 시장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는 또 하나의 상품이 등장했다(인성교육진흥법이 능사만은 아니다, 부산일보, 2015.6.7.). 입시와 취업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지표 이야기도 나오고, 인성교육 인증제는 벌써 진행 중이다(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 아이들은 어디로, 한겨레, 2015.6. 10.).

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의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 위탁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점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인성 관련 자격증 가운데 정부의 공인을 받은 것은 아직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하 인성·한자 교육정책에 자격증 난립... '호갱' 부른다, 서울신문, 2015.5.14.).

그러나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이 인성교육 전문가로 자처하고 나서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상품화하고 있다.¹¹⁾ 인성교육 정책이 초·중·고·대학 등 교육

11) 오원균 (사)대전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는 2일 특허청에 인성교육실천인증급수 발급허가를 특허출원을 했는데, 한자급수와 비슷한 인성교육실천인증급수 제도를 만들어, 인성교육 실천내용을 심의해 유치원은 8급에서 7급까지, 초등학교는 6급에서 5급까지, 중학교는 4급에서 3급까지, 고등학교와 대학, 일반은 2급에서 1급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오 대표는 "이 제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실천을 독려하고 동기 유발을 주도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대한민국의 인성교육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학과 일반인은 급수를 취득하면 직장에서는 승진에 활용되고,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인성교육 실천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필수약"이라고 말했다. 주건성 한국인성창의교육재단 원장도 동

40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일선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간업체들이 앞다퉀 관련 자격증을 만들면서 부실 교육 및 사교육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설립 허가를 받은 한 사단법인은 직능원에 인성 자격증 3종을 등록해 놓고 있다. 3종이 모두 인성지도사인데 그 대상만 ‘청소년’, ‘아동’, ‘유아’로 구분해 놓았다. 각각의 커리큘럼이 모두 수강료 49만원에 2개월 단위(8주 온라인, 2일 오프라인)로 구성돼 있으나 대상별로 교육 내용에 차이가 거의 없다. 특히 인성교육에 필수적인 실습은 단 1회에 그친다. 별도의 시험도 없이 수강만 하면 자격증을 내준다.

교육재단을 설립 중이라고 밝힌 또다른 업체는 단 1차례의 실습도 없이 9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30시간의 강의만 들으면 인성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내주고 있다. 자격 교육과정을 온라인 강의로만 구성한 업체들도 있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인성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인성 지도사 강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학원생을 모집하는가 하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자격증 취득 열풍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승환 교육감, “인성교육지도사 채용 안하겠다”, 전북도민일보, 2015.9.7.) .

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 운영의 실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2년전부터 운영을 해오던 것으로 교육부의 위임에 의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보수 성향 단체들이 꾸린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독점적인 인증권을 행사하고 있다(이하 전정윤 기자, 한겨레, 2015.7.29.). 신문에 의하면 법 제정 이후 교육부가 앞으로도 계속 인실련에 인증권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으나, 교육계에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한다. 교육부는 대학, 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을 인성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로부터 인증권을 독점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인실련이 하는 일에 관해서는 종종 언론이 이를 다루고 있다. 한국일보는 교육계 일각에서 인실련이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인증 대행기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재단이 30년 전통의 국내 최초·유일의 인성교육 전문기관임을 홍보하며, ‘인성은 대한민국 100년 미래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오는 7월에 맞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성교육의 필수 지침서, ‘인성은 미래다’를 출간했으며, 본 책 무료증정 및 무료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인성창의교육재단, ‘인성은 대한민국 100년 미래다’ 캠페인 전개, 헤럴드경제, 2015.5.7.)

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다(이하 '경제야 놀자'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한국일보, 2015.8.6. 참조). 한 인사는 “교총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등 보수적인 단체의 간부들이 인실련을 이끌고 있다”며, “이번이 없는 한 정부가 이 단체에게 인증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인증사업비’명목으로 인실련에 연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실련 관계자는 “평가 기준과 최종 인증 권한은 교육부가 갖고 있고 우리는 당국이 사전에 승인한 절차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하 '경제야 놀자'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한국일보, 2015.8.6.) .

또다른 신문인 한겨레는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가 인실련에 수십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한겨레, 2015.9.10.). 이 단체는 인성교육 사업비로 받은 교부금을 조직 행사에 쓰는 등 부적절하게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한겨레, 2015.9.10.).¹²⁾

3. 인성교육프로그램 외주화의 문제점

가. 인성교육진흥법의 본래 취지의 왜곡

인성이란 내가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과 공동체를 우선시해야 하는 덕목들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외부에서 수혈된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길러지는 뉘뉘이가 아니라고 한다(전정운 기자, 한겨레, 2015.7.29.).

12) 현재 교육부로부터 인증권을 독점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인실련이 하는 일에 관해서는 종종 언론이 이를 다루고 있다. 한국일보는 교육계 일각에서 인실련이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인증 대행기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다(이하 '경제야 놀자'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한국일보, 2015.8.6. 참조). 한 인사는 “교총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등 보수적인 단체의 간부들이 인실련을 이끌고 있다”며, “이번이 없는 한 정부가 이 단체에게 인증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인증사업비’명목으로 인실련에 연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실련 관계자는 “평가 기준과 최종 인증 권한은 교육부가 갖고 있고 우리는 당국이 사전에 승인한 절차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하 '경제야 놀자'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한국일보, 2015.8.6.). 또다른 신문인 한겨레는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가 인실련에 수십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이하 한겨레, 2015.9.10.). 이 단체는 인성교육 사업비로 받은 교부금을 조직 행사에 쓰는 등 부적절하게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한테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충남·전남·광주 등 지방 교육청을 통해 인실련에 20억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사업비로 받은 교부금의 일부를 단체의 기념행사나 경조사에 쓰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익계약과 관련된 위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한다. 한 업체와는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 수익계약을 맺은 뒤 그 일부를 도로 기부받기도 했다고 한다(한겨레, 2015.9.10.).

42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인성은 별도의 전문가에 의해 특정 프로그램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성은 오랜 시간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고,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가치가 내면화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인성교육, 법으로 될까, 경기일보, 2015.8.5.) .

외부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등의 대책은 매우 우려된다(인성, 교육 그리고 법, 경향신문, 2015.7.24). 인성이 오랜 시간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면 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학교 문화와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몇 시간의 교육 이수료 자격증을 받은 외부 전문가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인성, 교육 그리고 법, 경향신문, 2015.7.24). 진정으로 청소년의 인성이 중요하다면 학교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보다는 교사와 학생들이 관계맺기, 협력, 갈등해결 능력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인성, 교육 그리고 법, 경향신문, 2015.7.24)..

인성은 학교생활, 일상생활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길러져야 하고, 학습자의 지속적인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가치가 내면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별도의 인성교육보다는 교육의 전(全) 과정을 통하여 명시적 그리고 잠재적으로 길러져야 한다. 인성은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사회, 국가가 모두 학교가 되어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공감하면서 가슴으로 배우고 내면화된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조재윤, 인성교육, 법으로 한다?, 대전일보, 2015.7.29.) .

나. 학교와 학원의 주객 전도

인성교육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이야기에 인성교육지도사 등 민간 전문 자격증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인성이 대입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해 현재 민간에서 인성교육 관련 '인성지도사' 자격증이 총 250여 종이나 된다고 한다.¹³⁾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에서는 이때다 싶어 각종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을 양상해낸 것이다. 인성도 교육비를 내고 학원에서, 또는 과외를 통해서 기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조재윤, 인성교육, 법으로 한다?, 대전일보, 2015.7.29.). 안승문 서울특별시 교육자문관은 “입시

13) 난무한 자격증이 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7월 14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교사한테는 인터넷강의 틀어 놓고 입시교육을 하라고 하고, 정작 교사가 맡아야 하는 인성교육은 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행하라는 거 아니냐”라며 “인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현재의 방과후학교처럼 프로그램을 대기업에 위탁하는 식의 학원화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한겨레, 2015.8.11.).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평가기관이에요. 주요 교과 내용은 학원에서 배우고, 기타 과목은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선 그저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을 뿐이라는 답답함의 표현이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 인성교육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는 일은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주입식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영남일보, 2015.9.21.) .

다. 공교육 본질의 사교육사업화

한국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욕심에 무리를 해서라도 사교육에 집착한다.¹⁴⁾ 지난달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인성예절 교육이 ‘핫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진흥법이 나오자 인성은 순식간에 사교육으로 발전했다(이하 경상일보, 2015.5.18 참조.)

특히 올초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대행해 주는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이하 경상일보, 2015.5.18 참조.). 학원마다 인성면접 대비반이 생기고, 인성교육 수료증을 발급하는 단체가 250여개나 세워졌다.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기피하는 마당이니 ‘인성 공(公)교육’마저 ‘인성 사(私)교육’에 밀려날 것은 뻔하다(정병진 칼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한국일보,

14) 슬한 사교육 대책이 소용없다(고미석, 사교육 대한민국 ‘장가 과외’는 없다, 동아일보, 2015.8.5.). 학과, 예체능은 물론이고 고무줄놀이와 공기놀이까지 과외를 시킨다. 연간 사교육 시장 규모는 33조 원, 올 정부 예산의 8.8% 수준이다. 대학 입학으로 사교육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취업 준비생 10명 중 4명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어학교육 등에 월평균 30만 원을 썼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미석, 사교육 대한민국 ‘장가 과외’는 없다, 동아일보, 2015.8.5.). 요즘은 입대 시기와 복무 분야를 선택하기 위한 입영 대상자 사교육이 성업 중이다. 경기불황과 취업난이 겹치면서 학사장교 같은 군 간부 준비반을 비롯해 통역 병 정보보호병 등 취업에 유리한 인기병과 입대반을 운영하는 학원이 10여 곳이나 된다(고미석, 사교육 대한민국 ‘장가 과외’는 없다, 동아일보, 2015.8.5.). 신붓감도 모자라는 이 세대는 장가들기 위한 사교육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 과외 없이는 군대도 맘대로 못 가는 세태가 씁쓸하다(고미석, 사교육 대한민국 ‘장가 과외’는 없다, 동아일보, 2015.8.5.)

44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2015. 7.22.) . 급기야 교육부는 지난 13일 대입 반영 방침을 백지화하는 소동까지 빚었다(이하 경상일보, 2015.5.18 참조.).

한겨레신문은 이 점에 관해서 사교육에 밀려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공교육의 본질’마저 인성 전문 기관과 강사들의 ‘밥벌이’로 때운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전정윤 기자, 한겨레, 2015.7.29.). 법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 인성교육을 학교와 교사가 아닌 전문 기관과 강사한테 위탁한 부분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전정윤 기자, 한겨레, 2015.7.29.).

VIII. 법·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본 인성교육진흥법의 과제

1.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

인성교육진흥법 제9조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조문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면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면서 정부위원으로는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을 거론하고 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법무부 차관이 제외된 것은 재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활발한 만큼 향후 법개정을 통해 법무부도 동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핵심가치·덕목에의 법·인권교육 관점에서의 보완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2호는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인성교

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대가 요구하는 인성의 가치와 덕목에는 이것 외에도 국가 사회의 시미능로서 요구되는 보다 적극적인 가치와 덕목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허종렬(2013 : 32-33)은 법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인성교육의 요소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사회적으로 분쟁 혹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지식과 합리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켜 사회유지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기른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함은 오래된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서 특히 법교육이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인성교육의 요소 중 민주시민정신이 거기에 포함되는 쪽으로 주장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의 문헌에서도 확인한 것이 소득이다. ...바로 민주시민성의 핵심을 이루는 법교육 요소들이 인성교육의 요소로서의 민주시민성 요소라는 통로를 통해 인성교육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어야 함을 확인한 것이 이번 연구의 확실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필자가 생각건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와 덕목으로 예시한 외에도 법에서 강조하는 정의, 준법정신 등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특히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표현을 포함한 헌법 전문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성 덕목을 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 법·인권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구체적 효과성 확보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도덕이나 윤리를 통한 교육보다도 인성교육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생활규범을 통한 생활지도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성교육의 좋은 방편이 되고 있다. 이 점은 초등학교 법교육교재로 개발된 “함께하는 법이야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어린이와 법 이야기’이다(허종렬 외, 2011). 이 단계에서는 ‘법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인정하게 생활하고 싶어요.’를 다루고 있다. 2단계는 ‘생활 속의 법 이야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친구를 놀리는 것도 폭력이 되나요?’ ‘상처 없이 자라고 싶어요.’ ‘인터넷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도 소비자예요.’를 다루고 있다. 3단계는 ‘법, 함께 만들어 가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법은 어디에서 다루나요?’ ‘위도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자치법을 열어요’를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예컨대, 2단계의 ‘친구를 놀리는 것도 폭력이 되나요?’라는 단원을 보면 친구들에게 별명을 부르거나 가벼운 욕을 할 수 있는지 토의를 해보게 하거나 왕따를 테마로 하는 역할극을 해보게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법적 차원이지만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상의 핵심 가치·덕목인 친구에 대한 예와 존중, 배려, 책임과 바로 통하는 실감나는 인성교육이 되는 동시에 법적 가치·덕목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인식, 인권 존중 등과도 그대로 연결되는 좋은 소재의 인성교육이 된다.

법교육의 구체적 효과에 관한 논문은 많이 있다. 권혜정(2009)의 ‘법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수업방해 행동의 개선’ 등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참고 문헌]

- 권혜정(2009).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방해 행동의 개선. 법과 인권교육연구. 제2권2호. pp. 23-48.
- 문용린 외(2010).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 허종렬(2010).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2010.12). pp. 42-67.
- 허종렬 외(2011). 함께 하는 법 이야기(1),(2),(3). 법무부.
- 허종렬·박형근·이지혜(2012). 미국 청소년자치법정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고인권교육연구. 제5권 3호(2012.12). pp. 107-127,
- 허종렬(2013). 법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서울교대-성균관대 창의인성교육 선도대학 프로그램 개발 포럼 주관, 법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법과 실제 발표논문 자료집. pp. 11-44.
- 현주 외 4인(2013).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1)-인성교육진단 및 발전과제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참고 자료

- 2014.5.26.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정의화 의원 외)
- 2014.12.3.-5. 인성교육진흥법 관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동소위원회 회의록
- 2014.12.4.-5. 인성교육진흥법안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
- 2014.12.24. 인성교육진흥법 관련 국회 법사법위원회 회의록과 검토보고서
- 2014.12.29. 인성교육진흥법 관련 국회 본회의 회의록 및 최종 통과 법률
2015. 7. 20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 2014.11-10-2015.11.9. 사이의 한국언론재단 검색사이트(kinds)에서의 인성교육진흥법 관련 기사 554건

•• 주제 발표 1 ••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과 쟁점**

[주제 발표 1]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과 쟁점

박 혜 경(전남교육정책연구소)

- I. 서론
- II. 인성교육진흥법의 배경과 내용
- III.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 논의
- IV. 결론 및 제언
- * 참고문헌

I. 서론

현대 사회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류는 과거에 비해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빈부격차 심화, 물질만능주의, 문화충돌, 우울과 불안,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 특히, 디지털문화의 발달로 생활 속도는 빨라지고 편해진 반면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결과, 성취, 무한 경쟁을 강조한 나머지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학교와 사회에서는 소통과 배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와 비슷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인간의 정서와 인간성을 재발견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즉, 이러한 부작용의 해결책으로 인성교육을 주목하였다. 우리 사회도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자살, 왕따 문제 등 공교육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최근 들어 인성교육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공격성과 폭력성을 인간성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¹⁾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의 주요 영역으로 인성역량을 제기하는 등²⁾ 인성교육의

52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은 미래 사회의 사고력 개발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인성을 갖춘 미래 인간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사고력 개발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³⁾.

정부에서도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소통과 존중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강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핵심 가치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력 등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과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은 헌법과 교육법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쟁점이 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와 인성교육법령의 내용을 분석하여 『인성교육진흥법』시행에 따른 몇 가지 쟁점들을 교육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인성교육진흥법의 배경과 내용

1. 인성교육진흥법의 배경

가. 이론적 배경

학자나 보는 관점에 따라 인성에 대한 정의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손봉호⁴⁾는

- 1) 조연순·김아영·임현식·신동주·조아미·김인전, "정의교육과 인성교육 구현을 위한 기초 연구 1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에 기초한 인성교육의 구성요소 탐색", 교육과학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제28집, 1998, 133면.
- 2) 이근호·이광우·박지만·박민정,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3-17, 2013, 5면.
- 3) 도승이, "행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사고개발(한국사고개발학회), 제9권 2호, 2013, 144면.
- 4) 손봉호, "인성교육의 철학적 기초, 인성교육 심포지움자료",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덕성, 심미적 소양, 개개인의 자아발견 및 우주와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 인식이라 하였고 정창우⁵⁾는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개인적 차원) 및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타인·공동체·자연과의 관계 차원)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인성의 개념이 학자마다 ‘인품’, ‘인격’, ‘인간성’, ‘사람됨’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다. 이는 그 나라의 국가성이나 문화, 교육적 특성 등에 따라 인성의 개념도 약간씩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인성을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1>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인성의 개념⁶⁾

선행연구	인성의 개념
황응연(1992)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동 및 태도, 동기, 경향성, 인생 과정들의 총합, 사람들에게 있어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독특한 구조이며, 인성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
이근철(1996)	좁게는 도덕성, 사회성 및 정서(감정)등을 의미, 넓게는 지·덕·체 또는 지·정·의를 모두 골고루 갖춘 전인성
손봉호(1996)	덕성, 심미적 소양, 개개인의 자아발견 및 우주와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 인식
이윤옥(1998)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가치개념의 의미를 내포
한국교육학회 (1998)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됨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
남궁달화 (1999)	사람의 성품이며, 성품은 성질과 품격,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됨의 바탕을 가리키는 말
조난심(2004)	인성은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을 지칭하는 것

1996.

5) 정창우·손경원·김남준·신호재·한혜민,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부, 2013, 12면.

Lickona & Davidson (2005)	인성을 도덕적 인성과 행동적 인성으로 구분함. 도덕적 인성은 핵심 윤리적 가치가 될 수 있는 정직, 정의와 같은 덕목을 의미하며, 행동적 인성은 인내심, 용기와 같이 옳은 것을 행하지 않도록 유혹하는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강인함을 의미
조연순(2008)	자신의 내면적 요구와 사회 환경적 필요를 지혜롭게 잘 조화시킴으로써 세상에 유익함을 미치는 인간의 특성
미 교육부 (2007, 2008)	존중, 공정성, 보살핌 등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책임감, 신뢰, 시민성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정서적, 지적, 도덕적 자질은 물론 이러한 자질들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
현주 외(2009)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
박성미 · 허승희 (2012)	개인의 심성, 성격 및 인격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인성이란 인간이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 있는 인격 및 행동특성
정창우 외(2013)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개인적 차원) 및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타인·공동체·자연과의 관계 차원)을 포함

지금까지 사람의 인성, 성품, 기질은 흔히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가치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인성은 불변의 성품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의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서 인성은 “인간 성품 계발과 관련된 역량으로, 자기 존중과 수용, 잠재력 개발, 자기통제와 조절능력 등 개인적 차원이나 개인적 자격으로 타인을 만나 발생하는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역량”⁷⁾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성 역량은 첫째, 인격이나 성격과 달리 인성은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을 내포한다는 점 둘째, 가치 교육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시대에 적합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요청된다는 점 셋째, 개인의 윤리가 사회공동체로 구현되는 두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

6) 차성현, “인성교육 개념의 재구조화”, 제6회 청람교육포럼 자료집, 2012, 8면을 참고하여 수정보완.

7) 이근호·김기철·김사훈·김현미·이명진·이상하·이인제,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탐색-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2013-2, 2013, 19면.

다는 점 넷째, 지적 역량 및 사회적 역량의 토대가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역량 함양이 요구된다는 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인성 역량은 타고나는 성격에 추가하여 교육될 수 있는 부분을 포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측면과 개개인의 상호 관계적 차원⁸⁾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인간다움, 사람됨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다. 앞의 인성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인성은 도덕적 평가 혹은 가치가 들어간 개념으로 옳고 그른 판단의 대상이 되고 교육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학교교육은 정의적인 교육효과에는 무관심하고 인지적 교육효과에만 집착해온 측면이 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학생에게 책을 읽게 만들고, 방정식을 모르던 학생에게 수학문제를 정확하게 풀게 하는 일에 주력해온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측면의 교육과정은 상대적으로 정의적 측면의 교육효과를 간과하게 하였다. 공부를 잘한다 하여 반드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듯이 공부를 잘 하는 인지적 능력과 인성으로 규정되는 정의적 상태는 별개의 것이다. 인지적으로는 발달되었어도 정의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강화되는 일은 학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입시와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학교분위기 속에서 지식은 습득되어도 학생들의 감정은 갈수록 비인간적인 속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⁹⁾

인성교육에 대해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은 다음의 <표 II-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표 II-2>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인성교육의 개념¹⁰⁾

선행연구	인성교육의 개념
Lickona (1993)	인성교육은 개인과 사회에게 유익한 핵심 덕목을 이해하고, 이런 가치에 대해 마음을 쓰며,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
허경철·조난	인성교육은 사람다운 사람,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을 기르려는 교

8) 광영순, “미래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역량재구조화”, 교육과정 제48호(2013년 여름), 2013, 14면.

9) 조연순·김아영·임현식·신동주·조아미·김인진, 전게서, 149면.

심 (1994)	육으로서 인간성 함양을 위한 기본생활습관(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위생, 물자절약), 자아확립(근면, 성실, 자주, 정직), 효도와 경애, 공동체 의식(질서, 협동, 준법, 타인존중, 책임, 봉사, 정의감)을 길러 주는 내용으로 구성
조연순 외 (1998)	인성교육을 바람직한 것으로의 변화,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육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인성교육의 구성요소로 협동정신이나 책임과과 같은 민주시민의식, 효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타인존중의식, 그리고 자아수용과 자아통제와 같은 자기존중의식을 강조
Hoge (2002)	바람직한 자질과 특성, 보편적인 핵심 도덕적 가치를 발달시키고자 하는 개인과 사회의 의식적인 노력
미교육부 (2008)	인성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존중, 정의, 민주시민 자질,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 등의 핵심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는 학습과정이며, 이를 위한 일련의 교육적 과정
현주 외 (2009)	인성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고 일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고와 행동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

나. 제안 배경

『인성교육진흥법』은 정의화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4. 5. 26일에 제안되었다. 동법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청소년자살, 학교폭력, 특히 세월호 사건 등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성의 중요성이 이슈로 부각되었다. 인성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성품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나 환경에서 학습과정을 통해서 인성이 길러진다고 한다. 국민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한국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춰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인성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교육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10) 인성교육진흥법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1073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 11면을 참고하여 수정보완.

첫째로 꼽았고, ‘학교폭력’이 그 다음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 ‘낮다’ 47.6%, ‘매우 낮다’ 24.8%, ‘보통이다’ 24.3%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72.4%를 차지하며, 학부모보다 일반 국민 전체의 인식이 더욱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으로 ‘인성교육’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초등학교 65.1%, 중학교 58.4%, 고등학교 41.6%로 드러나 앞으로 더욱 중시해야 할 교육방향은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이유¹²⁾를 보면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 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즉,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적 특징을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시대라고 규정하고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 인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정부분은 동의할 수 있으나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개인보다는 국가 우선의 관점에 기울어져 있고 경쟁 사회에서의 우월성 확보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 등은 인성교육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로 볼 여지가 있다.

인성의 함양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와 헌법상의 개인의 기본권을 침

11) 이강주·양승실·차성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13-35, 2013, 34-39면.

12) 인성교육진흥법안 검토보고서, 5면.

해한다는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은 몇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올바른 인성을 지닌 바람직한 시민을 길러내는 일을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로 삼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한 점, 교육의 기본관점이 인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 인성교육을 관련 주체들에게 의무로 규정하면서 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 그동안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던 인성교육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주체들(학교, 가정, 사회)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의의로 볼 수 있다.¹³⁾

2.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학교는 물론 가정,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국가와 지자체, 학교에 인성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제1조 목적을 시작으로 정의,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인성교육의 평가 등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 7. 21. 시행되었다. 이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제1조 목적에 이어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2015. 7. 21. 시행되었다.

자치법규로는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15. 10. 13일에 시행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지원 조례는 제1조 목적에 이어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인성교육진흥법』 공포에 따라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개인적으로는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소통과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

13) 유병열,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과 학교 도덕·인성교육의 실천 방향”,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5, 3면.

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 제3조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제4조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 학교장은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제6조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심의사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회의 등 규정, 제12조는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15.7.21]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7.21.]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지원조례 [시행 2015.10.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국가등의책무)	제4조(공청회의개최등)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인성교육의기본방향)	제5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심의 사항)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수립등)	제6조(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	제6조(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협의회)
제7조(계획수립등의협조)	제7조(위원회의회의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공청회의개최)	제8조(위원의제척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제9조(위원의해촉)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학교의인성교육기준과운영)	제10조(위원회운영세칙)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1조(인성교육지원등)	제11조(학교의인성교육기준과운영)	제11조(수당 등)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인증)	제12조(인성교육지원등)	제12조(인성교육 정책연구 학교운영 지원)
제13조(인증의유효기간)	제13조(인성교육의평가등)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인증의취소)	제14조(교원의연수등)	
제15조(인성교육예산지원)	제15조(인성교육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및지정기준등)	부칙
제16조(인성교육의평가등)	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재지정등)	
제17조(교원의연수등)	제17조(전문인력양성기관에대한보고요구등)	
제18조(학교의인성교육참여장려)		
제19조(언론의인성교육지원)		
제20조(전문인력의양성)		

제21조(권한의위임) 제22조(과태료) 부칙 <제13004호,2015.1.20>	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등의 공개) 제19조(과태료의부과기준) 부칙 <제26403호,2015.7.20>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	--

[그림 II-1] 인성교육진흥법령 조문정리

가. 용어 정의(제2조)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하며 8가지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명시하고 있다.

나. 기본방향(제5조)

『인성교육진흥법』 제5조에서 인성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그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1항에서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항에서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3항에서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국적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종합하면 『인성교육진흥법』이 인성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통합적, 장기적, 전국적 관점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주요 사항(제6조 이하)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교원 포함)등 여러 주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나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성교육진흥위원회, 학부모, 언론, 그리고 국민 전체에게는 간접적, 협력적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갈수록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인성교육이 가정, 학교, 사회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학부모들을 인성교육의 수동적 위치에 있는 협조자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¹⁴⁾.

의무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인성교육의 홍보,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담아야 한다.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와 공청회를 거쳐 개시 연도 전년도 9월 말까지는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해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준거로 하여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 수도 있으며,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을 통해 인성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교육부 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실행된 인성교육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매 학년도 3개월 전까지 수립, 실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인성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며, 인성교육

14) 유병열, 전게서, 4면.

62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고 교원들이 연간 4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이 연수는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연수와 학교의장이 연수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받아 시행하는 직무 연수 및 학교장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까지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¹⁵⁾.

한편, 학교의 장(교원 포함)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인성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에 의거하되 교육 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시 학교장은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7개 시도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되며, 학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나아가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사범대·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은 예비교원들의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 과목을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III.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1.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

가. 요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으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15) 인성교육진흥법안 검토보고서.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논의

이제 세계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법적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국가의 경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미래사회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과거 민족의 개념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성, 나아가 세계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며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정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다문화시대에서 국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 나라의 역사나 민족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거나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핵심 가치에는 ‘효’나 ‘예’처럼 종전의 윤리적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핵심역량 특히, 인성교육을 통해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에 발맞춰 인성의 핵심가치와 덕목을 변화시켜야 한다. 즉, 기존의 도덕·윤리적 덕목에서 세계 시민성과 창의성 덕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정의되어야 한다¹⁶⁾. 예로부터 중시되어 오던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등의 도덕·윤리적 덕목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신뢰, 리더십, 다양성, 평화의식 등의 덕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창의적 사고능력의 인지적 요소인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요소나 정의적 요소인 민감성, 개방성, 도전성 등의 덕목을 동시에 배양해야 한다¹⁷⁾.

16) 차경명, “인성교육 개념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13:48면.

17) 김왕동, “미국의 인성교육 현황과 시사점”, 교육정책포럼 제211호(한국교육개발원), 2011, 43면.

64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따라서 앞서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제시된 8가지 핵심 가치·덕목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세계 시민성을 키우는 덕목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인성교육의 기준과 방법

가. 요지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는 학교의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8가지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하며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학교, 가정, 지역 사회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 논의

이러한 인성교육의 기준과 운영 등에서 헌법과 교육법이 인정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쟁점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다. 먼저, 교사의 교육권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전문성’에서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교사의 교육권은 교육내용결정권, 교육방법결정권, 학생평가·징계·지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학교의 인성교육의 기준과 실시 방법은 여기에서 교사의 교육내용결정권, 교육방법결정권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가정이나 교실 밖에서 이뤄지던 인성교육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으로 학교로 이동되면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인성 교육이 국가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방법결정이나 교육내용

18) 손희권, “교원의 교육권의 범리”, 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육행정학회), 제25권 4호, 2007, 55-56면.

결정이 어려워진다. 법안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요인들이나 가이드라인은 교사가 창의적인 수업방법과 교실의 변화를 시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에서 국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다. 그리고 국가의 교육 목표는 홍익인간이며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것이지 대학 입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즉, 국가는 학교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대상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대책을 통해서 교육의 배분적 평등권을 보장함으로써 홍익인간의 이념을 달성하는 것이다¹⁹⁾. 그렇다면 인성 교육이 학교마다 또는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진행된다면 낙후된 농어촌지역과 도시의 교육격차는 현재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는 경우와 예산이나 시설이 부족한 학교는 인성교육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학습권을 제한받게 된다. 물론 인성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진행된다면 공산품을 만드는 것처럼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은 학교의 경계를 넘어 국가와 가정, 학교, 지역 사회가 함께 주체가 되어 교육환경을 만들고 인성 함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교가 중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학생들은 주체가 아닌 인성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생들에게만 인성교육이 이뤄진다고 해서 인성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냐는 의문이다. 인성을 교육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쳐두고서도 현행 학교 중심으로 실시되는 인성교육 방법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홈스쿨이나 대안학교 등 갈수록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교육공동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성교육은 오히려 이러한 학교 밖의 아이들에게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사의 교육내용결정과 교육방법결정권을 보장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주체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교육과정 총론에 인성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단위 교과교육과정 내에 인성 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할

19) 윤철수, “학생 교육권 보장과 교육복지”, 비판사회정책(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제20호, 2005, 61면.

것이다. 인성교육이 기존의 교육과정을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교육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이미 가정,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인성교육은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일반화시켜 나가야 인성교육이 우리의 교육과정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기본 교육과정 내에 인성교육이 반영,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에서는 어떻게 인성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도할 것인지 과학교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성 교육을 교과에 반영할 지도 나와야 한다. 이렇게 국가의 기본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반영되도록 해야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차원의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단계로 기본 교육과정 외에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서도 다양한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인성교육의 예산 편성

가. 요지

『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학교는 일정비율 이상을 인성교육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인성교육과 관련한 최근 3년간 국가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로 편성된 일반회계 사업은 없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12년 8억 3,000만원, 2013년 40억원, 2014년 32억원이 각각 집행되었고²⁰⁾ 2015년에는 26억원이 집행되거나 될 예정이다.

20) 인성교육진흥법안 검토보고서, 35면과 2013~2015년도 인성교육강화 기본계획(교육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표 IV-1> 최근 4년간 인성교육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사업명	사업비(재원)	사업내용
'12	인성교육 실천과제 발굴지원	250 (특별교부금)	○인성교육 실천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 200 ○인성교육 실천과제 발굴·수립을 위한 범국민 Survey실사:50
	인성교육 실천 지원사업	580 (특별교부금)	○인성교육 실천운동 확산 및 인증 : 250 ○어울림학교 선정·운영 : 330
'13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 종합 추진	4,000 (특별교부금)	○인성교육 실천 시범학교 운영 : 380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및 교사동아리 지원 : 1,480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개최 : 25 ○「인성교육 대상」 시상 : 50 ○인성교육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965 ○초·중·고 학생 인성수준 분석 및 조사도구 표준화 연구: 200 ○민간주도 체험·실천중심 범국민인성교육 확산 및 캠페인:274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 인증제 확대 : 196 ○「인성교육 실천한마당」 개최 : 300 ○인성교육 전문가 DB 구축 및 정보 제공 정책연구 : 30 ○선진국의 인성교육 성공사례 체험 및 분석 : 100
'14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 종합 추진	3,200 (특별교부금)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지원 : 740 ○인성교육 실천 교사동아리 지원 : 150 ○인성교육 시범학교 지원 : 420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 : 20 ○「인성교육 대상」 시상 : 40 ○「창의·인성교육 한마당」 개최 : 300 ○인성교육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1,180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확산 : 130

			○인성교육 확산 범국민 캠페인 : 220
'15	인성교육강화사업	2,660 (특별교부금)	○ 인성교육 실천 시범학교 운영 : 350 ○ 인성교육 우수학교 선정·지원 : 460 ○ 인성교육 우수 교사동아리 선정·지원 : 90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 : 20 ○ 2014년도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 시상 : 40 ○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선정·지원 : 820 ○ 인성교육 활성화 캠페인 : 60 ○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확산 : 80 ○ 초·중등 학생 인성수준 조사 : 80 ○ 학교급별 인성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 : 660

나. 논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시킨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존의 교육예산에서 재편성되거나 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해진 교육예산으로 인성교육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 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용에도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우리는 정치적 선전 효과가 큰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의 중요한 교육활동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졌던 사례들을 경험해왔다. 인성교육 때문에 학교의 다른 교육활동들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비교육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정해진 교육예산에서 추가로 인성교육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인성교육과 전혀 관계없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를 관리 감독하는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²¹⁾.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고 미래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인성 교육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관리·감독기관

21) 고대혁, 인성교육 진흥법의 함정, 경기일보 2015. 2. 26. 신문기사.

이 필요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인성교육지도사 등 인성 관련 자격증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2008년 2개에 불과했던 인성 관련 민간자격증이 2014년 151개로 늘더니 2015년에는 1년 만에 253개로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교육 실천사례나 내용을 급수로 매겨서 자격증을 발급해 주기도 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 목적을 살리고 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성 교육이 예산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 이름만 바뀐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4.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가. 요지

『인성교육진흥법』 제9조에서는 인성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소속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심의에 관한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립제 행정관청과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그 성격이 자문기관, 의결기관 또는 행정관청인 위원회로 구분될 수 있다. 자문기관은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위원회 기능 변경, 정비 등에 관한 신속한 대응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²⁾. 또한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22) 인성교육진흥법안 검토보고서, 21면.

나. 논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제9조에서는 인성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심의’가 인성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심사하고 토의하는 의미를 지닌 단순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심사하고 의결하는 의결기구인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이러한 법적 성격과 역할을 명확하게 밝힌 후 그에 따라 위원들을 구성해 나가야 위원회 설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교육부 소관 위원회는 ‘교육과정심의회’ 등 30개인데 이중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되어 현재 25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성교육은 교육부만의 소관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이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 밖 인성교육도 지원하고 학교 밖의 인성교육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가정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나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전통정신문화나 예술·체육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직간접적으로 인성교육과 관계가 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관계부처 차관들을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여러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5개 위원회가 있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등 59개 위원회에 달해 과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인성교육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의무지출 성격의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관련 종합계획수립과 예산 심사 등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인성교육진흥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핵심컨트롤타워가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시설, 인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속으로 두게 되면 인성교육의 진흥이라는 기존의 목적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인성교육에 대한 관련 부처들과 상호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보다 상위의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

5. 인성교육의 평가

가. 요지

『인성교육진흥법』 제16조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자체와 관련한 독립적인 평가는 없는 상황이다.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에 따르면,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교사가 관찰하여 기록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생의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 예체능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²³⁾하도록 되어 있다.

나. 논의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인성교육의 평가에 대한 문제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23) 인성교육진흥법안 검토보고서, 38-39면.

72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제정안에는 5년마다 인성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과 연계시키려는 취지였지만 법안의 검토과정에서 평가의 주기가 수정되었다. 여기에서 인성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가하는 문제와 그것도 1년마다 평가하는 시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인성교육은 현재의 우리 삶에서 상실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아이는 예절교육을 받으면 거기에서 형성된 공경심을 실천하며 살게끔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아이는 봉사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함양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자신의 주관적 소망을 객관적 사실에 뒤집어씌우는 것(심리학 용어로 투사), 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곧 객관적 사실로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공경하는 행동이나 봉사하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이 표현된 결과이며, 그 마음은 어디까지가 공경심이고 또 어디까지가 봉사정신인지를 확연히 구획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이유에서다. 이처럼 일체의 구분 없이 공경심과 봉사정신 등 모든 것을 응축하여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요 또한 인성²⁴⁾이라고 볼 때, 공경하는 행동이나 봉사하는 태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성교육 평가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심리를 눈에 보이는 태도나 행동으로 바꿔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학교의 교과과정 내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질 경우, 교과교육은 인성교육을 통해 그것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 등으로 표현되도록 하여 어느 정도 평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 이기주의나 체험활동중심의 형식적인 운영이 되거나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 도구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여지도 있다.

또한 인성교육평가는 1년마다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간에 평가를 하게 되면 자칫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인성교육이 이벤트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사람의 인성이 하루아침에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 아무리

24) 박종덕, “인성교육과 교과교육: 인성교육은 가능하고 필요한가?”, 도덕교육연구(한국도덕교육학회), 제26권 1호, 2014, 181-183면.

우수한 인성교육이라 해도 인성 역량을 함양하기까지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평가하는 기준도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중심, 결과중심에서 벗어나 성취의 과정, 활동의 참여 등 과정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1년마다 인성교육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중장기 안목을 갖고 인성교육진흥을 계획하고 그러한 과정과 성취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 인성조차 법으로 만들어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규정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와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인성 역량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본다.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선정과 인성교육 기준과 실시 방법, 의무적인 예산편성,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인성교육 평가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정 대상에게만 또는 별도의 인성교육 실시로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지킬 수 없다. 더구나 농어촌지역이나 작은 학교와 같이 교육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교는 시설과 예산이 필요한 인성교육활동은 진행하기 힘들어진다. 둘째, 인성교육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 중심의 기본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반영되어 흡수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교과교육 과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별도의 인성교육을 만들거나 따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교과교육과정 내에서 인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농어

74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촌 및 도서 벽지 지역에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인성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넷째, 교육권의 실현을 위해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참여와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인성교육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참고 문헌]

- 고대혁, 인성교육 진흥법의 함정, 경기일보 2015. 2. 26. 신문기사.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2014.11.
- 곽영순, “미래 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역량 재구조화”, 교육과정 제48호 (2013년 여름), 2013, 12-17면.
- 김길순,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한국사상과문화(한국사상문화학회), 제78권, 2015, 459-486면.
- 김민수, “‘인성교육’ 담론에서 ‘인성’ 개념의 근거”, 교양교육연구(한국교양교육학회), 제8권 4호, 2014, 169-206면.
- 김왕동, “미국의 인성교육 현황과 시사점”, 교육정책포럼 제211호(한국교육개발원), 2011, 40-44면.
- 도승이, “행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실현방안”, 사고개발(한국사고개발학회), 제9권 2호, 2013, 143-159면.
- 박종덕, “인성교육과 교과교육: 인성교육은 가능하고 필요한가?”, 도덕교육연구(한국도덕교육학회), 제26권 1호, 2014, 177-194면.
- 손봉호, “인성교육의 철학적 기초, 인성교육 심포지움자료”,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6.
- 손희권, “교원의 교육권의 법리”, 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육행정학회), 제25권 4호, 2007, 47-72면.
- 유병열,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과 학교 도덕, 인성교육의 실천 방향”,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5, 3-15면.
- 윤철수, “학생 교육권 보장과 교육복지”, 비판사회정책(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제20호, 2005, 59-85면.
- 이강주·양승실·차성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13-35, 2013.
- 이근호·김기철·김사훈·김현미·이명진·이상하·이인제,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2013-2, 2013.
- 이근호·이광우·박지만·박민정,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

76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 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3-17, 2013.
- 인성교육진흥법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1073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 11.
- 인성교육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073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2.
- 인성교육진흥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14.
- 인성교육진흥법안 의사국 의안원문, 2014. 5. 26.
- 장승희,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의 본질과 인성교육의 방향 - 행복담론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한국윤리교육학회), 제37집, 2015, 75-104면.
- 정창우 · 손경원 · 김남준 · 신호재 · 한혜민,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부, 2013.
- 조연순 · 김아영 · 임현식 · 신동주 · 조아미 · 김인전, “정의교육과 인성교육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1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에 기초한 인성교육의 구성요소 탐색”, 교육과학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제28집, 1998, 131-152면.
- 지은림, 도승이, 이운선. “인성지수 개발 연구”, 교육부, 2013.
- 차경명, “인성교육 개념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차성현, “인성교육 개념의 재구조화”, 제6회 청람교육포럼 자료집, 2012, 8면.
- 현 주 · 장명림 · 정광희 · 한미영 · 류덕엽, “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Ⅱ):초등교원 인성교육 연수자료 개발”, 연구보고 RR 2014-02, 한국교육개발원, 2014.
- 2013년도 인성교육강화 기본계획, 2013.8.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
- 2014년도 인성교육강화 기본계획, 2014.4.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
- 2015년도 인성교육강화 기본계획, 2015.3.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토론]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토론

박 찬 권(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토론에 앞서 상세한 설명과 정치한 분석을 통해 새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을 접하고 생각할 기회를 주신 발표자와 사회자께 감사를 드린다. 법학을 전공한 필자가 인성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할지 논함으로써 공교육의 적극적 인성교육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자칫 심오한 교육철학이 담긴 문제를 범인의 인식 수준에서 피상적으로 논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에 관한 언급은 되도록 자제하려 한다. 다만,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니는 법적 형식의 문제와 헌법적 가치와의 관련문제는 우리 법체계 내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과연 법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발표자의 논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먼저 인성교육진흥법의 법적 형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문만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개념인 ‘인성’, 특히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조문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밝혀낸다.(헌재결 1992. 2. 25. 89헌가104) 이 법의 경우 인성교육과 핵심 가치·덕목 등의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와의 관계 하에서 법 제1조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2조의 개념정의로 보완하더라도 인성이란 개인의 내면적 차원과 타인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이라는 의미로만 해석될 뿐 무엇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서 윤리적·규범적 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또한 법 제2조

78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에서 핵심 가치·덕목으로 예, 효, 정직, 책임 등 여러 덕성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것이 개인의 내면적 차원 및 사회의 관계적 차원에서 발현되는 인성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는 별도의 해석이 요구된다. 특히, 법 제1조에서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법에서 지향하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헌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바라본 인성을 함께 규정해야 함에도 새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그러하지 못하다.

결국 발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인성과 인성교육을 법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소지가 있기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러한 법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법의 수범자인 개개인은 법이 규율한 내용을 전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를 자제하거나 유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없으며, 법의 집행자인 국가권력은 자의적인 법해석을 방지할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기에 권력남용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헌재결 1998. 4. 30. 95헌가16) 뿐만 아니라 인성과 인성교육에 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채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진행을 교육부장관에게 일임한 법 제6조 이하의 규정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에 관한 본질적 내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유보의 원칙 및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 법률주의와도 맞지 않는다.(헌재결 2012. 11. 29. 2011헌마827) 더구나 어떠한 방향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인 국회의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지원을 위한 수익적 법률로서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고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육기관의 재량적 판단의 폭을 넓게 보는 관점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국가권력에 의해 동질화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헌법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사회의 자율성에 완전히 맡기는 것도 헌법상 타당하지 않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이념과 가치에 관한 일반적 결정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짐을 전제로 구체적인 교육이념과 교육방법을 교육기관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헌재결 1992. 11. 12. 89헌마88) 따라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지향하는 인성의 내용은 국가적 차원의 합의를 통해 먼저 정해진 후 세부적인 내용과 이념은 교육기관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법률에 인성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명확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하기 보다는 국민의 또 다른 합의인 헌법의 체계에 맞게 법률을 재해석함으로써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경우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합헌으로 해석되는 가능성을 찾아 법률해석을 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헌재결 1990. 4. 2. 89헌가113) 또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과정에서 법률에 규정된 어떤 내용이 헌법과 배치되거나 모순된다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해당 법률규정을 위헌으로 보고 해석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헌재결 2004. 11. 25. 2002헌바66) 그러면 합헌적 법률해석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따를 때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과 인성교육의 의미는 어떠한지가 다음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제1조에서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의 바탕을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교육기본법상 교육이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인성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인성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인간 그 자체는 목적으로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자율성, 즉 주체적 인간으로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때 이루어진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임을 헌법재판소는 존엄사판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헌재결 2009. 11. 26. 2008헌마385)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

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보면서,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닌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잡힌 인격체를 지향한다.(헌재결 2003. 10. 30. 2002헌마518) 교육기본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의 인격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성을 갖춘 주체적 개인이야말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지향하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성은 민주시민의 자질과도 연결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토대로 모든 정치적 견해들의 상대적 진리성을 인정하는 다원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헌재결 2014. 12. 19. 2013헌다1) 그러므로 발표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나 효처럼 종전의 윤리적 덕목을 인성의 핵심가치로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 만약, 예나 효를 인성교육진흥법이 지향하는 가치덕목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면 법 제1조에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 외에 헌법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을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의 바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헌법에서 추구하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이란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올바른지 여부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관련한 헌법적 논의는 주로 헌법 제19조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서 나타난다. 양심을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 구체적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보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를 잘 나타낸다.(헌재결 1997. 3. 27. 96헌가1. 헌재결 2004. 8. 26. 2002헌가1) 따라서 국가가 인성교육진흥회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성교육평가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우리헌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 오히려 이는 인성교육에 있어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자율적이어야 할 헌법의 인간상과는 반대로 학생들을 타율성을 지닌 공동체의 구성분자로만 존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가지게 된다.

특히, 발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와 가정, 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인성교육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학부모를 인성교육의 수동적 위치에 있는 협조자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도 배치된다.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학교 내 공교육영역에서는 부모가 학교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지만 학교 밖에서는 가족의 사적 자율성에 따른 부모의 교육권과 이에 따른 자녀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권이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 다만 학교 밖 사교육의 자정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현저히 상실되어 이것이 학교 내의 공교육의 기능을 저해할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이다. (헌재결 2000. 4. 27. 98헌가16) 그러므로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인성교육을 국가가 사회와 가정까지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위헌으로까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의 전반적 체계 및 헌법정신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발표자에게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결국 교육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적극적 인성교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국가의 적극적 인성교육을 인정만한 교육철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진행하기보다 교과교육과정 내에서 인성교육의 진행을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우문에 대해 현답으로 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의 토론을 마치겠다.

[토론]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토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교육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한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토론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발표문에 대해 궁금한 점과 이후의 교육법 및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토론해보았으면 하는 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1. 발표자는 서론에서 이 연구의 목적이 “인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와 인성교육 법령의 내용을 분석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몇 가지 쟁점들을 교육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 데에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목을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의 주요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또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의 주요쟁점 및 과제” 등으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Ⅱ. 인성교육진흥법의 배경과 내용”에서 “1. 인성교육진흥법의 배경”의 “가. 이론적 배경”은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소제목을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 대상(2개의 표 포함)에 서정화 외(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 2014)를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쪽의 “나. 제안 배경”에서 제안된 것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아니라 『인성교육진흥법안』이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 시행 당시에 제정 및 시행되었어야 하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법적 관점의 연구를 표방하였으므로 “법률안 제안배경”인지 “법률 제정의 이유(또는 목적)”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나.

제안 배경”을 “나. 법률 제정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에서 법률과 시행령, 조례(경기도의 사례)의 조항 구성을 표와 설명으로 제시하고, 주요 조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뒤의 제3장에서 주요쟁점을 분석 및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법령 체계와 내용 구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위임의 근거 및 시행에 관한 사항들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표를 그에 따라 구조적으로 제시하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사항(시행령 제12조 제4항)과 그 밖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사례로 제시한 경기도 조례의 경우에 그 외에 추가로 규정된 사항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면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정화 외(2014)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에서 “가. 용어 정의(제2조)”와 “나. 기본방향(제5조)”, “다. 주요 사항(제6조 이하)”으로 하위목차를 구성하였으나, 그렇게 구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찾기 어렵고 그 구분이 균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조항에 대해 소개하거나, 주요조항을 선별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조항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항과 뒤에서 쟁점으로 제시할 조항을 중심으로 선정 및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Ⅲ.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에서 “1.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 “2. 인성교육의 기준과 방법”, “3. 인성교육의 예산 편성”, “4.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 “5. 인성교육의 평가” 등 5가지를 쟁점으로 제시하고, 그 요지와 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쟁점을 5가지로 선정한 근거나 기준, 과정 등에 대해 본문에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지와 논의는 5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분석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분석기준을 이 2가지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본문에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쟁점과 과제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밝힌

84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연구목적과 제3장의 제목이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논리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논의 이후에 “과제”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현재 “논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인성교육의 기준과 방법”에서 “과거에는 주로 가정이나 교실 밖에서 이뤄지던 인성교육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으로 학교로 이동되면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법안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요인들이나 가이드라인은 교사가 창의적인 수업방법과 교실의 변화를 시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성 교육이 학교마다 또는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진행된다면 낙후된 농어촌지역과 도시의 교육격차는 현재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다” 등의 진단 및 표현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 것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개인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은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편성·운영되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발표문의 진단 및 표현에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기준과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추가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인성교육의 예산 편성”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시킨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강제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법률 제정과정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오히려 실효성 있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개발·보급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공감하고, 이는 현재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격상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교육법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에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및 “인성교육에 대한 관련 부처들과 상호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의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무총리 소속이나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많고, 법률 제정 및 시행 초기에 장관 소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보다 자주 논의하는 데에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제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5. 인성교육의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발표자의 견해에 대해 큰틀에서 공감하나, 발표문에는 그에 대한 반론 즉 평가의 필요성 및 활용 등에 대한 의견들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IV. 결론 및 제언”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 등에서는 인성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시민교육” 또는 “시민의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인성교육”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거나 의무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인성교육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미에는 공감하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지역 등에서 그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및 수단이 부족하므로 해당 지역 및 학교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및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했던 사항에서 결론 및 제언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점을 추가하고, 법률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방안”,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 및 지역사회, 언론 등이 학교와 연계하여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체계 및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등을 추가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 주제 발표 2 ••

**인성교육진흥법의
법 · 인권교육적 쟁점과 과제**

[주제 발표 2]

인성교육진흥법의 법·인권교육적 쟁점과 과제

최종찬(주덕고등학교 교사)

- I. 문제제기
- II.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과 인성교육의 필요성
 - 1.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
 - 2. 인성교육의 필요성
- III.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 · 덕목’의 검토 및 대안
 - 1.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 · 덕목’의 검토
 - 2.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 · 덕목’의 문제점과 대안
- IV. ‘인성교육진흥법’의 교육적 · 제도적 접근
 - 1.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중립성 문제와 학교교육현장 부적합성
 - 2. 인성교육 평가의 획일화, 서열화 가능성
 - 3.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V. 제언
 - * 참고문헌

I. 문제제기

우리는 ‘자녀 교육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부분 ‘인성’ 또는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흔히 ‘공부’ 보다는 ‘인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만큼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MB 정부 후반에 불거진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태는 우리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고(조난심, 2015: 135),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찾기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인성교육법진흥법’이 제정되었다(장승희, 2015. 75).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¹⁾을 앞두고, 한국사회에는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김영래외, 2015. 40). 또한,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교육은 인성교육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또다시 ‘인성교육’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들의 근거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안이유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

1) 박종호 건국대 교육심리학과 교수는 “인성 교육을 법에 명문화한 해외 선진국은 없다”며 “인성교육은 모든 교과목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전제되어 있을 뿐이고 국가와 학교는 학생 인성 계발을 돕는 봉사·체육·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이라고 했다. 미국은 1994년 ‘학교 개선을 위한 법’에서 인성 교육을 강조했지만, 일선 학교에 별도의 독립된 인성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 과목을 두고 있지는 않다. 대신 ‘인성교육파트너십(CEP)’이란 전국 규모의 인성교육기구를 마련해 교사들을 상대로 인성교육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인성교육 관련 학술회를 열고 있다. 나치 독재를 경험한 독일 역시 민주주의나 공동체 의식 등의 덕목을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강조하지만 인성 관련 특정 교과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모든 교과목의 궁극적 목표를 인성 함양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15.8.18.)

2)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 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성 교육의 강화’라는 대의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다. 인성교육은 다른 교육영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인성교육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방향이나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인성교육은 일정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다양한 교육적 노력들이 수렴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김영래외, 2015. 22). 여기에서 우리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말하는 ‘인성’이란 무엇인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 시행상 여러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 할 수 있다.

본 발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절에서는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과 ‘인성교육’의 필요성, III절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육적 관점에서 8가지 ‘핵심 가치·덕목’이 인성교육에 있어 필요적합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IV절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의 교육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보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핵심가치·덕목’이 ‘인성교육’의 실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지를 정리하고 그 대안과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과 인성교육의 필요성

1.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

1) ‘인성’의 개념

‘인성 및 인성교육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와 같은 물음처럼, 학문 체계와 논리 속에서 그 답변을 제대로 찾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근본적인 물음이다. 인성의 개념에는 우리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면모, 성질, 자질, 성품, 덕성이라는 의미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내포되어 있다(정창우, 69).

인성이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본래적이고 바람직한 성품과 역량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인성교육이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바람직한 본성, 본래적 성품을 갈고 닦아 발전시키고 함양하여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질과 역량과 품성을 기르는 교육적 노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유병열, 2015.3: 306). 그러면 인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자.

<표1> 인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연구자	인성의 개념
황응연 (1992)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동 및 태도, 동기, 경향성, 인생 과정들의 총합. 사람들에게 있어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독특한 구조이며, 인성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 포함.
이근철 (1996)	좁게는 도덕성, 사회성, 정서(감정) 등을 의미하고, 넓게는 지·덕·체 또는 지·정·의를 골고루 갖춘 인간성

한국 교육학 회 (1998)	인성은 사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됨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
남궁달화 (1999)	인간의 성품으로, 성품은 〇 인간의 성질과 품격으로 구성됨. 여기서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됨의 바탕
조난심 등 (2004)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인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
미 교육부 (2007, 2008)	존중, 공정성, 보살핌 등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책임감, 신뢰, 시민성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정서적, 지적, 도덕적 자질은 물론 이러한 자질들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 포함
조연순 (2007)	자신의 내면적 요구와 사회환경적 필요를 지혜롭게 잘 조화시킴으로써 세상에 유익함을 미치는 인간의 특성
강선보 등 (2008)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인간다운 성품, 인간 본연의 모습
현주 등 (2009)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심리적 · 행동적 특성
박성미 · 허승희 (2012)	인간이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 있는 인격 및 행동 특성
교육과학기술부 (2012)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으로 도덕성, 사회성, 감성
현주 등 (2014)	긍정적이고 건강한 개인의 삶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질과 역량

* 정창우(2015, 70)의 표를 재인용함.

2) ‘인성교육’의 개념

인성교육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로의 진보를 이루어낸 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성교육이란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 공동체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한다(정창우, 75). 그러면 오랜 전통속에서 이루어진 공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자.

<표2>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변천사

구분	인간상	비고
제 1 차 교 육 과 정 (1954 고시)	○ 별도의 교육적 인간상 미제시 - 교육법 제 2조 『교육의 목적』에 따름.	○교육법 제2조 -홍익 인간의 교육 이념
제2차 교 육 과 정 (1963)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역사적 현실 속 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 한 민국의 국민 - 국가의 거래의 이상과 현실을 명철히 이해 하는 인간 - 국민 각자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완 수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역동적인 인간	○자주성, 생산 성, 유용성의 강 조
제3차 교 육 과 정 (1973)	가. 국민적 자질의 함양 ①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②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③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나. 인간 교육의 강화 ① 가치관 교육의 강화 ② 비인간화 경향의 극복 ③ 근면성과 협동성의 양양 다.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① 기본 능력의 배양 ② 기본 개념의 파악 ③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④ 산학 협동 교 육의 강화	○자아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 치의 강조

<p>제4차 교육과 정 (1981)</p>	<p>○민주,복지,정의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 육성 ①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 강한 사람 ②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사람 ③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 ④ 인간을 존중하며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⑤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p>	<p>○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이 인격 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p>
<p>제5차 교육과 정 (1987)</p>	<p>①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②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 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③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 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④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p>	<p>○21세기의 세계 화·정보화 시대 를 주도할 자율적 이고 창의적인 한 국민인 육성</p>
<p>제6차 교육과 정 (1992)</p>	<p>① 건강한 사람 ② 자주적인 사람 ③ 창의적인 사람 ④ 도덕적인 사람</p>	<p>○도덕성과 공동 체 의식이 투철 한 민주 시민 육 성</p>

제7차 교육과 정 (1997) ※2007 개 정 교육과 정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1세기의 세계화
---	---	------------

* 최준환외(2009, 92-95)의 표를 재인용함.

2. 인성교육의 필요성

앞에서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창의인성 ·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편 정책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86.1%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1.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최상덕 외, 168).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인성과 관련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문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왕따 및 각종 폭력문제에서부터 성인 사회의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잘못된 갑을 관계 및 많은 부정부패 현상 등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상실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더하여 마침내 온 국민을 충격과 비통 속에 몰아넣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으니 이 모든 것들은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다운 삶이 무너진 우리 사회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유병열, 72).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8가지 핵심 가치 · 덕목이 과연 시의적절(時宜適切)

하는지 여부, 인성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내용요소인지에 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음 III장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 · 덕목’을 검토하고자 한다.

III.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 · 덕목’의 검토 및 대안

1.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 · 덕목’의 검토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2항은 “‘핵심 가치 ·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2조 3항에서는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 ·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 · 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제시된 ‘핵심 가치 · 덕목’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각 교과교육의 목표로 제시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가치 · 덕목’을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든다. 본 장에서는 동법에서 제시된 ‘핵심 가치 · 덕목’의 적절성 및 우리 교과교육과 미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인성교육에서의 ‘핵심 가치 · 덕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성교육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기 강조하여 교육해야 할 인성 덕목이나 인성역량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교육에서는 기존의 지식 중심의 내용만이 아니라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 곧 학교 인성교육에서는 기존의 인격교육에서 강조하는 덕목들이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핵

심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조난심, 143). 그러면 교과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인성교육의 가치덕목 · 인성역량은 무엇인지 인성교육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3>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학교 인성교육 요소

구분	인성교육 요소		
이광우 외(2009)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준법정신, 환경의식, 윤리의식, 봉사정신	
문용린 외(2010)	인간관계 덕목	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유	
	인성판단 능력	도덕적 예민성,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 행동실천력	
이명준 외(2011)	배려, 정직, 성실, 예절, 바른생활습관		
유병열 외(2012)	지혜, 용기, 성실, 절제, 효도, 예절, 존중, 배려, 책임, 협동		
관계부처합동(2012)	인성핵심역량	공감능력, 소통능력, 갈등해결 능력, 관용, 정의	
오기성 외(2012)	품성으로서 인성의 하위 요소	개인적 덕목 (individual virtues)	정직, 성실, 책임, 절제
		인간관계 덕목 (interpersonal virtues)	배려, 관용 정의 협동
	정의적 특성 및 도덕적 능력으로서 인성의 하위 요소	심리적 특질	자기 존중감,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열정과 의지, 도덕적 국가 정체성
		도덕적 능력	관점 채택 능력 (perspective taking), 공감능력, 판단능력, 행위능력
교과부(2012e)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자신감, 긍정적 태도	

	인성교육 핵심요소	소통능력, 봉사정신, 갈등관리능력, 배려정신, 규칙준수, 타인존중, 관용정신, 책임감
이근호 외(2012)	인성역량	도덕/정서지능을 갖춘 삶: 도덕적 감수성, 자기통제력, 자기동기화 능력 등
양정실 외(2013)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 덕목 · 인성역량	존중, 배려, 책임, 참여와 협동, 공감과 수용, 대화와 소통능력, 문제와 갈등해결 능력, 정의

* 조난심(2015, 145)의 표를 재인용함.

그러면 학교교과교육에서 정의하는 ‘인성’의 핵심가치·덕목은 무엇일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양정실외, 2014. p23 이후)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 보고서는 교과별(국어·도덕·사회·음악·미술) 교사 총 1,120명과 초·중학생 총 2,240명 그리고 학부모 총 2,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들을 감안하여 각 교과 교육과정에 연관되는 인성교육 요소들을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조난심, 2015. 145).

- * 국어과 : 존중, 배려, 참여와 협동, 공감, 대화와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정의, 성찰
- * 도덕과 : 존중, 배려 책임, 참여와 협동, 공감, 대화와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정의
- * 사회과 : 인권, 관용, 참여, 공감, 문제 해결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정의
- * 음악과 : 존중, 배려, 자율과 책임, 참여와 협동, 음악적 감수성, 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과 판단력, 정의

* 미술과 : 존중과 배려, 자율과 책임, 참여와 협동, 미적 감수성, 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과 판단력

다음으로 미국의 인성교육을 살펴보자. 미국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방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차원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인성교육프로그램보다는 민간인(대학교수나 기타 시민단체)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은 철저한 지방자치의 원칙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최준환외, 95-96). 이러한 미국 인성교육의 10대 덕목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미국인성교육의 10대 덕목

덕 목	내 용
신용(Trustworthiness)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말에 책임을 짐 비밀을 지키며 배반을 하지 않음 자신이나 친구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음 충성을 해야 할 일이라 여겨지면 충성을 다함
타인존중(Respect)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함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배려 타인을 존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대함 타인과 자신과의 차이를 인정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 해결 타인을 의도적으로 당황하게 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음
책임감(Responsibility)	해야 할 일이면 즉시 실천에 옮김 신용을 잘 지키고 책임진가하지 않음 자신의 도덕기준에 맞추어 행동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 자기 통제가 잘됨

공 정 / 정 의 (Fairness/Justice)	타인을 공정하고 편견없이 대함 개방적이며 이성적으로 행동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음 타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일을 결정하고 행동
배려(Caring)	비열하지도 잔인하지도 않고 남의 감정에 둔감하지 않음 자비, 친절과 관용을 베풀음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희생 타인의 관심과 필요를 헤아림
시민정신(Citizenship)	지역사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좋은 사회건설을 위해 충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환경보호에 관심 법 준수
정직(Honesty)	믿을 만하고 진실하며 정의로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음
용기(Courage)	비록 나 혼자만일지라도 옳은 일을 하고자 함 친구의 좋지않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음 주변의 몇 몇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의견을 표현
성실(Diligence)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것을 추구 자기관리 철저 일을 할 때 꾸물거리지 않음 목표를 세우면 행동의 초점을 맞추고 실행
통합성(Integrity)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 유혹에 의해 나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음 자신에 비추어 부끄럼 없는 행동을 함

*최준환외(95-96)의 표를 재인용함.

일본은 “오모이야리”, 한자로는 思遣(사견) 즉 ‘생각을 보낸다’라는 뜻으로 남의 입장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인성의 의미로서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의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 일본 문부과학성의 인성교육 방향은 학업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초·중·고 학생들의 휴머니티(humanity)와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Kokoro(心) no Note(도덕교육을 위한 노트)을 보급하고 성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최준환외, 96-97). 또한, 독일의 경우는 가정교육이 인성교육의 밑바탕을 이루고, 가정에서는 주로 질서, 청결, 책임, 개인주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립심이 주가 되고 있다. 한편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은 공동체의식을 심는 사회교육이 주가 되는데, 독일의 경우 18세면 어른이므로 경제적으로 홀로서기 시작하면서, 자립심, 자율성, 책임감을 고취하게 되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최준환외, 97). 중국의 경우 상하이 지역의 인성교육이 알려져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중국 상하이 인성교육 덕목

교육과정	교육내용
개인 · 사회적 차원 (Personal & Social Dimension)	건강한 기질과 호기심 배양 공중예절 함양 사회적 매너 숙지 노약자 보호
지역사회적 차원 (Local Dimension)	지역사회발전의 관심 고취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인 대처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이해
국가적 차원 (National Dimension)	국가발전의 관심 고취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인 대처 국가와 국기에 대한 경외심 고취 국가적인 문화 보호
국제적 차원 (Global Dimension)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관심 고취 타국가의 문화 이해 국제 문제 해결능력 배양 국제사회의 평화증진에 이바지

2.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덕목’의 문제점과 대안

이상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덕목’과 선행연구, 각 교과교육과 미국에서의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동법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덕목’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성교육은 범교과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법에서 제시된 ‘핵심 가치·덕목’은 도덕·윤리교과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요소와 강력한 관계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KEDI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인성검사지의 인성덕목과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덕목’은 거의 비슷하다.

<표5> KEDI 인성검사지 기본 구성

인성덕목(하위요인)	구성내용	문항수
1. 자기존중	자기존중, 자기효능	7
2. 성실	인내(끈기), 근면성	8
3. 배려·소통	타인이해 및 공감, 친절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10
4. (사회적)책임	책임성, 협동심, 규칙이행	6
5. 예의	효도, 공경	7
6. 자기조절	자기통제(감정, 충동, 행동), 신중성	6

7. 정직 · 용기	정직성, 솔직성, 용감성	7
8. 지혜	개방성,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안목	6
9. 정의	공정, 공평, 인권존중	5
10. 시민성	애국심, 타문화이해, 세계시민의식	8
합 계		70

또한 동법이 제시한 8가지 ‘핵심 가치 · 덕목’ 중에서 예(禮)와 효(孝)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예(禮)’와 ‘효(孝)’를 유일하게 교육과정에 편제한 과목이 도덕 · 윤리교과가 유일함으로 이제까지 범교과적인 접근을 통해 실시하였던 현재의 인성교육과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들을 검토 하였듯이,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예(禮)’와 ‘효(孝)’를 적시한 국가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은 구분되어 있다는 견해,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은 관련이 부족하며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교과는 특정되어 있고 인성교육 전담 교과의 시수가 늘어나면 인성교육의 효과도 커질 것이다’라는 주장은 교육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을 통해 구현되는 인성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과수업의 내용이나 활동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도덕 교과를 통해 도덕적 가치나 관련 지식에 대한 인식 능력 및 도덕적 실천 태도 등이 길러질 수 있고, 예술 관련 교과에서의 예술적 표현이나 감상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이 길러질 수 있으며, 과학 교과에서의 자연 현상에 대한 진지한 탐구 활동을 통해 자연의 질서에 대한 경외감이나 생명 현상에 대한 존중 의식 및 태도 등도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은지용, 2015. 173). 그러므로 범교과적인 목표로서의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禮)’와 ‘효(孝)’를 핵심 가치 · 덕목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잘 못 된 선입견으로서, 인성교육을 도덕·윤리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여타 교과들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구분하는 관점(유병렬, 2015.7)이 있는가 하면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의 요소의 전제를 도덕성에서 찾는 견해가 있고(장승희, 2015.85)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도덕·윤리교과에서 하면 된다는 핑계로 다른 교과들에서 인성교육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조난심, 2015. 137).

따라서 반드시 법률로써 인성교육의 목표를 명시해야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성교육을 교과의 본질적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인성교육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인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도덕·윤리교과가 이제까지 실시했던 인성교육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인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과’가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은 교과목표로서 달성 되어 질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통합수업, 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교육의 전반적인 활동 및 통합교과에서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성교육진흥법’제1조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의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그러한 국민이 이바지하는 이 국가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바로 이러한 국민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가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들이 공동체 생활의 문제나 쟁점 해결을 위해 소통과 공론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생활 원리 및 방식을 말한다. 즉,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강조하는 시민성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원리 및 방식에 따라 공공선 실현을 위해 공동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민주 시민적 자

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은지용, 2013. 147).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은 특정한 인성교육 교과나 도덕·윤리교과에서만 육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학교교육과정의 사회 교과는 '민주주의를 전제한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강조하는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시민성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원리 및 방식에 따라 공선 실현을 위해 공동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민주 시민적 자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은지용, 2013. 147). 그렇다면, 인성과 시민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존재한다. 인성을 갖춘 개인(국민)이 민주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본 발제자는 인성의 핵심 가치 · 덕목은 국가와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과 관련된 사고방식과 그에 따르는 행동과 감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³⁾

IV. '인성교육진흥법'시행의 교육적 · 제도적 접근

1.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와 학교교육현장 부적합성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①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인성을 “민주 사회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공동체적 가치, 덕목, 감성, 태도, 실천적 행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은지용, 2013. 148).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인력·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인성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동위원회의 구성은 실제 교육 현장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기능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이유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대거 참여하여 위원회의 기능이 정부의 의지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이유로 실제 학교 현장의 정서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반영하는데 효과적이거나 현장적합성이 높은 인성교육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위원회를 구성 할 때 현장의 교원, 특히 다양한 교과교사들을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현장적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인성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들을 활발히 하여 학교 현장에 구체적인 교육실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성교육 평가의 획일화, 서열화 가능성

제16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6조의 인성교육의 1년 단위의 평가는 방침은 인성교육을 획일화, 서열화, 형식화 할 가능성과 평가를 위한 ‘보여주기식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인성이란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의 평가 목적은 인성교육의 수립과 실천의 효율성과 적절성,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여건과 토대를 제공해 주는 기회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의 ‘인성교육 주(州) 파일럿 프로젝트 파트너십 (Partnership in Character Education State Pilot Projects, 1995-2001)의 결론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각 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성공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환경 · 교사의 능력 · 부모와 지역 공동체의 참여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 중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인성교육의 방법 · 절차 ·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는 것,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안전한 학교 형성 · 학업 성취도 향상 등에 영향을 평가하는 것, 학부모 및 지역 공동체가 인성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정창우, 2015, 258).

그래서 인성교육의 평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학교현장

의 인성교육의 역량 강화, 학부모 및 지역 공동체가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의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컨설팅의 형태로 실시 되어야 한다.

3.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성교육진흥법’제 17조2항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20조는 전문인력의 자격을 놓고 혼란을 줄 것이다. 교원의 인성교육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원 양성기관의 예비교원들은 관련 과목들을 필수로 개설 운영한다고 하고 별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다. 벌써부터 ‘인성지도사 자격증’

을 취득하기 위한 열기가 뜨겁고 ‘비인증 자격증’들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조차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까하여 자격증 취득에 뛰어들고 있다.⁴⁾ 동법 제20조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전문인력의 역할의 범위와 그 효과성도 명확하지 않다.

인성교육은 다른 교육영역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강의나 상담, 일회성 교육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인성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 · 전개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학교 경영진과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해 간다는 점에서 학교 인성교육의 성패 역시 이들에게 달려 있게 된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학교장의 인성교육 관련 안목과 신념 및 리더쉽 여하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과 사명감 및 열정 등은 성패를 좌우하는 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이 인성교육 전문성과 높은 사명감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매진해 갈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 강화해야 한다(유병렬, 2015, 14-15). 그러므로 인성교육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은 현직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대폭 늘리고 예비교원 양성기관과 예비교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인성이 대입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해 현재 인성지도사 등 인성교육 민간 자격증이 총 250여 종이나 난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행령 15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에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학, 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자격증이 난무해 있지만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5.7.14.문화일보)

V. 제언

1. ‘인성교육진흥법’제1조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의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이 이바지하는 국가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 덕목’은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강조하는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원리 및 방식에 따라 공공선 실현을 위해 공동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민주 시민적 자질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럼으로 인성의 핵심 가치 · 덕목’은 국가와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과 관련된 사고방식과 그에 따르는 행동과 감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시한 8가지 ‘핵심 가치 · 덕목’중에서 예(禮)와 효(孝)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예(禮)와 ‘효(孝)’를 유일하게 교육과정에 편제한 과목이 도덕 · 윤리교과가 유일함으로 이제까지 범교과적인 접근을 통해 실시하였던 현재의 인성교육과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인성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예(禮)와 ‘효(孝)’를 적시한 국가는 찾기 어렵다. 그럼으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 덕목’ 중 ‘예(禮)와 ‘효(孝)’를 ‘공동체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보아 시민적 자질로써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인성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구성이 정부의 고위공무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인성교육’이 악용 될 소지가 크고 실제 교육현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성교육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으로 위원회를 구성 할 때 현장의 교원, 특히 다양한 교과교사들을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현장적합성을 높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위원회는 ‘인성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들을 활발히 하여 학교 현장에 구체적인 교육실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인성’을 특징을 고려한다면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1년 단위의 평가는 방침은 인성교육을 획일화, 서열화, 형식화 할 가능성과 평가를 위한 ‘보여주기식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인성이란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래서 인성교육의 평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학교현장의 인성교육의 역량 강화, 학부모 및 지역 공동체가 인성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의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컨설팅의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

5. 인성교육은 다른 교육분야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강의나 상담, 일회성 교육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 · 전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은 학교 현장 관계자들이 인성교육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현직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대폭 늘리고 예비교원 양성기관과 예비교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김길순(2015),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한국사상과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제70권, 459-486.
- 김수진(2015), 인성교육의 주요 접근, 『교육과정연구』, 한국교육과정학회, 제33권 2호, 207-229.
- 김영래외(2015),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가치덕목’ 과 ‘핵심 역량’ 의 연구모형에 관한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한독교육학회, 제20권 2호, 21-45.
- 김향인(2015), 인성교육과 도덕딜레마 토론,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 81-86.
- 박종덕(2014), 인성교육과 교과교육: 인성교육은 가능하고 필요한가?, 『도덕교육연구』, 한국도덕교육학회, 제26권 1호, 177-194.
- 서정화(2015), 인성교육 강화와 교원 역량 강화의 과제,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67권, 3-39.
- 양정실외(2015),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구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우수보고서 시리즈』, 6권.
- 유병열(2015), 인성교육의 성과와 한계,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통권 39호. 71-95.
- 유병열(2015),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과 학교 도덕 · 인성교육의 실천 방향, 『한국초등도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15.
- 은지용(2013), 사회과 인성교육 개념 및 요소에 대한 탐색, 『시민교육연구』, 제45권 3호, 143-174.
- 은지용(2015), ‘교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과 교원의 역량’ 에 대한 토론,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통권 39호, 171-180.
- 장승희(2015), ‘인성교육진흥법’ 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의 본질과 인성교육의 방향, 『윤리교육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통권 37권, 75-104.
- 조난심(2015), 교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과 교원의 역량,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

114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대회 자료집』, 통권 39호, 135-180.

정창우(2015).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최준환외(2009). 인성교육의 문제점 및 창의 · 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 『창의
력교육연구』,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제9권 2호, 89-112.

최상덕외(2012),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방향과 전략: 2013~2017년 핵심교육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최승현(2015), 역사적 담론으로서의 인성교육론, 『교육철학연구』, 한국교육
철학학회, 제37권 2호, 179-197.

•• 주제 발표 3 ••

**인성교육진흥법상
핵심 가치 · 덕목 및 역량과 법교육**

[주제 발표 3]

인성교육진흥법상 핵심 가치·덕목 및 역량과 법교육

박 인 현(대구교대 교수)

- I. 서론
- II.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긍·부정적 논의
- III. 인성교육진흥법의 지향점과 체계 분석
- IV.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 및 역량과 법교육
- V. 결론
- * 참고문헌

I. 서론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지난 70년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을 통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와 정치를 비롯하여 문화, 교육, 인권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면서 선진사회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엄청난 압축적 성장이었고, 그 와중에 나타났던 여러 부조리와 사회적 모순들은 원인을 따지거나 대책을 마련할 겨를도 없이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소위 사회지도층의 부정과 비리들이 드러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도모를 위한 범죄의 빈발과, 학교폭력의 일반화 등이 나타나면서 부조리와 모순의 뿌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지만, 대증적 처방만을 남발하였지 근본적인 대책의 제시와 그 실천을 통한 성숙한 사회로의 이행노력에는 소홀하였다. 성숙한 사회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군사적으로 강대한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를 기본으로 하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의 진보와 개선이 동반되어야 성숙한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하다(정창우,2015,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살게 되면 모든 면에서 수준이 높아져 사회적 부정, 부조리, 모순이 해결되면서 ‘성숙한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막연한 순리’를 믿고 있었던 듯하다. 즉, 성숙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자성적이고 자기비판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기대와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존재인 ‘사회적 자아’ 형성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박인현,2012,28).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특성을 형성하려는 가정과 학교, 사회의 노력이 미약하였으며, 균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사회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

지난 수차례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개인윤리와 더불어 사회윤리(국민윤리라는 이름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적용된 바 있음)를 교육하면서 성숙한 사회의 형성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 교육의 결과 우리가 성숙한 사회에 도달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음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두 차원의 통합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사회구성원의 인성 수준이기 때문이다(정창우,2015,15~16).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제도적 장치는 무용하며, 성숙한 사회로의 단계 도약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성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인성은 무엇이며, 또 인성교육은 무엇일까? 유병열(2015,71)은 인성이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본래적이고 바람직한 성품과 역량’이라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동서양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 받을만한 인격적 특성과 도덕적 역량 및 시민적 역량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도덕성 개념을 포함하여 인간 본연의 사람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란 ‘인간의 바람직한 본성, 본래적 성품을 갈고닦아 발현시키고, 함양하여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질과 역량과 품성을 기르는 교육적 노력’이라고 정의한다. 정창우(2015,64~69)는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은 주로 철학과 심리학을 중심으로 풍부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밝히면서, 인성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면모, 성질, 자질, 성품, 덕성 등 인류보편적 가치와 덕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전통과 상황적 특수성에 기초한 덕목 및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창우는 이러한 인성의 구체적 요소인 성품이나 덕성 등의 덕과 인성역량 등의 개념과 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인성교육의 성격과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인성교육이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로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정창우,2015,75).

우리는 최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성에 대한 교육에 급격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인성교육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지만, 특별히 강조되기 시작한 때는 1995년 5.31 교육개혁부터이다. 5.31 교육개혁은 당시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입시위주의 암기교육이라고 규정짓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품위 있는 인간교육 실천의 여섯 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학교 및 가정과 사회에서 인성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인성교육의 속성상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곡을 짚은 것이다. 그 후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이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세 가지 시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유병열,2015,79~80). 즉, 태동 및 퇴보적 유지기(5.31 교육개혁~노무현정부), 쇠퇴기(이명박정부), 부활기(박근혜정부)로 나누고 부활기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2014년 12월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이다. 이 법은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04호로 제정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막 출범한 인성교육진흥법의 수행주체 및 교육적 효과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내용과 체계의 분석과 더불어 인성교육의 핵심적 가치·덕목과 역량과 법교육의 본질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긍·부정적 논의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상호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제정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인성교육진흥법’은 가장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여러 부작용과, 정착까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결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인성의 실종에서 비롯된 대참사들을 겪으며 더 이상 ‘인성교육’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의 발현이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이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은 뒤틀린 교육제도를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한다. 실령제도의 변화와 적용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기적인 교육방향의 제시와 분위기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작금의 입시위주 교육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 시행될 제도들이 본 취지대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5.2.27).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온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교총이 법안 통과 후 밝힌 입장도 첫째, 단일의 법으로까지 인성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할 정도로 우리의 교육에 위기감을 가지고 반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법의 통과로 인성교육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학력위주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된 범국가적 인성교육실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초기부터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이 가능토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넷째,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시 현장 교육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한국교총 홍보자료, 2015.2).

그러나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 자체의 의미와 더불어 법의 내용 및 인성교육의 효과 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인성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변질되는 것에 대한 염려이다. 인성을 구성하는 가치 틀에는 경중이 없는 바, 핵심이라는 말을 곁들인 구분법은 현재까지 학생들의 인성을 도외시하도록 만들던 등급제와 같은 구조를 양산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존 교육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인성교육진흥법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교육주체에 대한 우려로 이 법으로 인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사교육 단체들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인성마저 경쟁을 위해 학습하고 맞추어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이다. 셋째,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의 준비상태이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학교는 계획안 수립,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사는 인성교육연수 이행의 의무를 지닌다. 교원양성기관 역시 필수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인성이 의무로서 강요되고, 교육정책을 위한 인성함양이 강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허지현,2015.8;안혜리,2015.7.21).

또 현재 2017학년도 입시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인성 발달 사항을 핵심적으로 반영하기로 하거나, 인·적성을 평가하는 '비교과전형' 선발인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인 바, 인성을 점수화할 경우 자가 진단의 허위작성 우려와 타인에 의한 인성평가의 계량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인성 평가를 과연 공정하게 점수화할 수 있는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윤세원,2015.7.21).

또한 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에 대한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방향설정의 난점과,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상 초, 중, 고 교육현장에 대해서 무경험인 고위 공무원이나 명망가로만 구성될 우려,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양성된 전문인력과 기존 교사와의 관계, 국민정서 인식과 '핵심 가치·덕목'선정의 관련성, 사회의 도덕적 성장을 위한 시책의 구체화 방안 모색, 학교의 재량권 부여시 범위의 문제, 인성교육이 인증, 평가에 과도한 기대를 하는 점 등에 대한 우려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도 있다(김길순, 한국사상과 문화 제78집,2015.467~475).

이와 같이 인성교육진흥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그 논란이 팽팽하다. 특히 법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걱정하는 의견들이 상당하다. 인성교육을 위한 단일의 법이 마련되었다는 자체에는 의미를 둘 수 있으나 과연 인성이 이 법에 의하여 제대로 길러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Ⅲ. 인성교육진흥법의 지향점과 체계 분석

1.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과 기본방향

인성교육진흥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을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동조 제1항)고 함으로써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회적인 교육임을 지향하고 있다. 또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최종적인 목표를 전인적 인격형성에 두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행교육으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동조 제3항)고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이 범국가적 교육으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회적인 교육임을 지향함에,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노력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제4조 제3항).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범국민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의 의무(제4조 제4항)부여 및 국민들에게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 협력의무를 부여(제4조 제5항)하고 있다.

인성교육이 최종적인 목표를 전인적 인격형성에 두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행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하므로, 인성교육진흥법은 이의 실현을 위하여 본법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에게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여 인성교육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또 인성교육이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

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 계획수립이나 시책의 수립에는 공청회를 의무화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정책과 시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또 학교 인성교육을 위하여 학교장에게 인성교육의 실시 의무를 부여하였고(제10조 제2항),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10조 제4항). 또 사회인성교육을 위하여 학교 이외의 기관 등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제12조 제1항~제3항) 전국적인 교육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지향하는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인력양성의 차원으로 학교 교원의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 의무(제17조 제1항)와 교원양성기관에게는 예비교원들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의 필수개설의 의무(제17조 제2항)를 부여하고 있고, 인성교육 확대, 즉 사회인성교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문 인력 양성의무를 부여(제20조 제1항)함으로써,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2.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2015년 1월 20일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은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도 마련되었다. 이 법은 대부분의 조항들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이 특징이다.

가. 인성교육의 정의 및 목표의 구체적 제시

인성교육진흥법은 제2조에서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조 제1호).

인성교육진흥법은 또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핵심적 가치·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동조 제2호). 그리고 이것이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나 덕목을 의미하는 인성교육의 인지적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열거한 8가지 외의 가치·덕목도 인성교육의 목표로서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목표의 실천을 위한 행동적인 목표로 핵심적 가치·덕목을 실행함에 필요한 지식과 더불어 공감

하고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합한 능력을 인성교육에서 길러야 할 핵심 역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동조 제3호).

나.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주체

인성교육진흥법은 장기적인 틀에서 국가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역량 선정,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시행령은 교육부장관에게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시·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학교 인성교육을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의 장에게 매년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인성교육 핵심가치·덕목을 중심으로 인성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동법 제10조 제1항~제3항).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종합계획, 실적점검 및 평가, 지원 등의 심의를 위하여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6조).

다. 인성교육의 평가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주된 시행주체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동법 제16조). 그리고 이 평가에는 인성교육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와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당초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학생 인성수준도 평가 내용으로 하는 것과,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평가를 위하여 학년별 학생의 인성 수준, 학부모 만족

도, 교원 의견 등 학교 인성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등이 논의되었으나 시행령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는 기존 사업평가 방식의 일률적인 평가가 아닌, 학교 현장에 적합한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이 정하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제고

인성교육진흥법은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의무화하고, 교원양성기관(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에 의 인성교육 관련과목의 개설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연수계획의 주체는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기관의 장이나 학교장이 연간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마.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인성교육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상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개설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들¹⁾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²⁾ 혹은 민법의 비영리법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항, 제16조).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 모두 23개 기관이 있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모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유효기간으로 인증하며,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이러한 인증의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7항).³⁾

IV.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 덕목 및 역량과 법교육

1. 핵심 가치 · 덕목과 역량 제시의 의미

인성(人性)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의 본성 혹은 사람의 성품’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다움’을 중시하였고, ‘사람답다’라는 의미는 ‘그 됨됨이나 하는 일이 사람의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다’는 뜻이다(장승희, 2015, 79). 이러한 인성은 유교적인 문화에서 매우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인간이 갖추어야 할 본성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사람됨의 기본적인 요구인 인성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본시 인성이란 용어는 1970~80년대 서구의 자아실현 중심의 인본주의 심리학의 영향으로 인성교육이 소개되면서, humanistic(인본주의), character(인격), personality(개성) 등이 ‘인성’으로 번역되어 보편화되었다고 본다(장승희, 2015, 80~81).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5.31교육개혁에서 인성교육이 처음 나타난 이후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을 강조하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2014년 세월호 사건과 사회 및 학교에서의 부조리와 부정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어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까지 이어져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

3) 인성교육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과정 인증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측면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요 담론으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인성교육에서 ‘무엇이 인성인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를 정리·요약해 보면, 우선, 인성이라는 용어가 유교적인 고유용어라는 인식 때문에 기피되었다는 것(장승희,2015,81)이다. 또 인성이라는 용어가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어 보편적인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려웠다는 점(김태훈,1999,47)이다. 그리고 매우 상반된 두 입장으로, 인성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과 인성 개념의 폭과 깊이가 너무 넓고 심오하여 명쾌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장승희,2015,82~83)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하여 인성교육의 전제가 되고 목표가 되는 인성의 덕목을 선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덕목을 선정하려면 무엇보다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관계자들의 지지와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정직, 타인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은 내용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필수 교육 덕목으로 선정되었다(정창우,2015,9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1,600여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주요 덕목을 조사한 결과 정직, 배려, 예절, 성실 등과 같은 상위 10개 덕목이 선정되었다. 이는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유된 인식과 학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지지와 협력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정창우,2015,97).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인성교육의 목표로 8개의 핵심적 가치·덕목을 선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핵심 가치·덕목을 8개로 선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선정된 핵심 덕목의 한정적 열거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인성교육의 가치·덕목을 모두 나열할 수 없으므로 예시적 열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인성교육의 범위나 내용의 결정과 지역과 학교에 따른 인성교육 계획의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이다.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 제시와 관련하여 과연 인성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덕목이라는 것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윤병오,2011,157). 그러나 인성교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덕목들이 피상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와, 덕목들의 의미와 해석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 그리고 심리학적이거나 교육학적으로 학습자들

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에 반영된다는 전제(김태훈,1999,47)가 충족된다면 덕목 선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 바, 이 견해가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적 가치·덕목의 추출의 근거는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근거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론적 근거는 덕윤리학(德倫理學), 인성교육론, 도덕심리학, 긍정심리학 등이 있고, 경험적 근거로는 도덕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위해 주요 덕목을 설정한 국내외 사례 등을 활용한다. 이 근거들을 활용하여 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덕목을 12가지로 추출한 연구가 있다(정창우,2015,103~104). 추출방법은 두 근거를 종합하여 4개 이상의 근거에 해당되는 덕목들을 선정한 바, 개인적 차원에서 지혜, 용기, 성실, 절제를 관계적 차원에서 효도, 예절, 존중, 배려, 책임, 협동, 준법, 정의를 선정하였다(정창우, 2015,106). 한편, 교과 본질적 준거와 사회적 요구 준거를 바탕으로 사회과 인성교육의 핵심요소를 추출한 연구도 있다(은지용,2013,153~159). 이 연구에서는 인권, 정의, 관용, 공감, 참여, 갈등해결력, 문제해결력 등을 사회과 인성교육의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성교육에서 덕목론에 따른 인성교육의 덕목 선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여러 나라의 경험적 근거들도 있다. 본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가치·덕목은 효, 예, 책임, 존중, 배려, 협동과 같은 주로 관계적 차원의 가치·덕목들이고 개인적 차원의 덕목으로 분류되는 가치·덕목은 특별히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정직과 소통이라는 핵심 가치·덕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직은 개인적 차원의 핵심 덕목인 성실의 관련 하위 덕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소통은 이론적 근거나 경험적 근거로 보아 핵심적 가치·덕목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인성교육의 핵심적 가치·덕목으로서의 의미와 해석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가치와 덕목을 추출하여 제시한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또 본 법에서는 핵심역량을 효, 예, 책임, 존중, 배려, 협동, 정직, 소통과 같은 핵심 가치·덕목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 실행함에 필요한 지식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 혹은 갈등해결능력이 통합된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이란 지식과 기능을 통합한 능력이므로, 인성교육의 핵심적 가치·덕목에 대한 지식적 이해능력을 지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제 본 법에 열거된 핵심적인 가치·덕목의 의미와 기능 및 관련되는 하위 덕목과 역량 등을 파악하여 법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고, 학교 및 사회 법교육이 인성교육을 위한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법교육과 핵심적 가치·덕목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목표 8가지 덕목은 그 정의(定義)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관련되는 교육 내용과 범위는 많이 달라진다. 이 가치·덕목들은 주로 도덕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학교 교과교육의 정의적 목표 영역에서 지향하는 가치·태도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목표로서 핵심적 가치·덕목들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되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이념에 따른 정의보다는 현대적인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차원의 정의를 통하여 법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교육을 위한 현행 법률로는 법교육지원법이 있고, 이 법은 지난 2008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법교육지원법은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으로 나누어 거기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을 지원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합리적인 법의식의 함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해, 나아가 건전한 민주시민의 육성을 통한 법치주의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법교육지원법상 지원의 대상인 법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닌 목적과 내용상 인성교육의 방법 내지 인성교육의 장(場)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역량의 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場)을 기준으로 보면 학교 법교육은 교과교육으로서의 법교육과 학교생활교육으로서의 법교육으로 구별할 수 있고, 사회 법교육은 청소년비행 예방 및 교정교육으로서의 법교육과 평생교육(성인교육)으로서의 법교육으로 구분되므로, 법교육은 다양한 장(場)에서 제공될 수 있다(박성혁, 2005, 16). 학습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이 있으나, 인성교육과 관련되는 법교육은 후자라고 보아야 한다.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법개념과 지식을 중시하는 입장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을 중시하는 입

장, 입법과 집행 및 사법에 대한 참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허종렬,2009,82). 지금은 어느 한 입장에 입각하여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통합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법교육의 내용구성의 강조점이 두어진다.

법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식적 목표는 법과 규칙의 필요성 인식, 법의 기초 개념과 법지식에 대한 이해 증진, 법체계와 법절차에 대한 인식, 헌법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이다. 인지적 기능의 목표로는 법적 갈등상황 분석과 법적 사고력 배양, 법적 절차에 필요한 참여능력 신장 등을 들고 있으나(허종렬,2009,82;박형근,2010,60), 법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제시한 연구(박상준,2009,11)도 있다. 또 정의적인 목표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식, 법적 권위의 존중, 타인의 권리 존중, 법체제 개선을 위한 참여 태도 형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법교육의 목표 영역별 구성내용은 지식 영역의 경우 법의 이념, 법치주의, 인권, 기본권, 분쟁해결, 법문화 등 하위 내용영역을 두고, 민주사회에서 규칙과 법의 필요성,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의 역할, 개인적·사회적 인권의 개념, 평등과 불평등의 제도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자유와 정의의 개념 등의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기능영역은 인지적 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실천 등의 하위 내용영역에 법적인 논점과 관련된 정보 조사, 논점에 대한 비판적 평가, 법적 논점에 대한 결정과 판단, 법적 논점에 대한 생각과 의견의 명확한 표현, 토의나 협상을 통한 갈등해결 및 공감대 형성,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다른 사람 설득하기, 법집행 과정의 체험 등의 관련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정의적 영역에서는 자유, 관용, 평등, 정의,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문제의 합리적 해결, 자발적인 준법, 절차에 대한 존중, 정당한 권위의 존중 등이 구성요소(박용조,2011,29;박상준,2009,10~11;박형근,2010,62)이며, 법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교육의 목표 및 내용영역과 구성요소들을 볼 때, 이들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핵심적 가치·덕목들의 실천 및 실행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과 판결이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헌법을 비롯한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 교육과정에 법교육의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교육 혹은 법교육 또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고 바른 인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교육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시민성 교육의 한 영역인 법교육의 목표가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적 덕목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인성교육진흥법상의 핵심적 가치·덕목과 법교육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가. ‘예(禮)’와의 관련성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의 핵심적 가치·덕목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예(禮)이다. 본 법에서 제시한 예(禮)는 이미 언급한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으로 제시된 예절(禮節)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예의(禮儀)를 포용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법에서 왜 예의나 예절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禮)라고 표현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우 다의적이고 폭넓은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예를 예의와 예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예의(禮儀)는 사전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몸가짐’ 혹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땅히 가져야 할 행동’ 등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예절은 사전적으로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라고 한다. 또 예절이란 ‘사람이 만든 질서에 따라 나와 남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알맞은 언어와 행동 방법을 정한 것’(김충렬,1994,102)이다.

이 정의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 혹은 개념들을 발견하면서 예(禮)가 지니는 의미와 관련되는 하위의 실천 덕목 및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연계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경의와 존경이라는 표현에서 ‘상대방 존중’, 혹은 ‘상대의 인격 존중’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말투나 몸가짐이라는 표현에서 ‘자신의 낮춤’을 의미한다고 본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앞서면, 우리의 언행과 태도의 형식은 자연스럽게 그에 따르기 때문(정창우,2015,110)이라고 한다. 그리고 ‘절차 혹은 질서에 따라’라는 표현에서 ‘질서유지’ 혹은 ‘규칙준수’ 등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예(禮)의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관련되는 하위 실천덕목을 ‘남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는 ‘에티켓을 지키거나 규범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예(禮)는 법교육의 본질에 입각하여 볼 때, 교과 내용적으로 ‘법과 규칙이 필요한 이유’,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 ‘인권존중과 그 보장’, ‘공공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법교육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사회와 구성원간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것이며, 크든 작든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의 기능과 법적 절차의 정당

성을 학습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육성되는 가치·태도는 ‘절차의 존중’과 ‘질서 준수’, ‘상대방 존중’과 같은 것이므로 이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는 가치·덕목인 ‘예(禮)’에서 의미하는 내용과 연관된다. 뿐만 아니라 규칙의 중요성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도 나와 같은 권리임을 안다는 것, 공공생활에서의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인식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공동적 생활에서 소통능력을 길러 주는 기본적인 지식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이다. 따라서 법교육은 예(禮)를 실천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효(孝)’와의 관련성

효(孝)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라고 풀이된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의 목표로서 ‘효’라고 되어 있으나, 효도, 효성으로 불러 왔고, 자손이 부모님과 조상님께 공경하고 정성스럽게 순종하는 도덕이라는 윤리적 의미가 묻어나는 용어로 본다(김지수, 2014, 37). 그리고 ‘효’ 혹은 효도는 부모에게서 양육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도리, 즉 감은의 정신이 담겨 있다. 따라서 빛을 갚는 것이므로 법률상 채무변제에 해당(김지수, 2015, 37)한다는 입장도 있으므로, 효의 의미는 일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덕목이 아니라 상호적 관계로 이해된다. 이를 확대하면 형제자매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나누어주는 우애와 경애로 발전하게 되며, 진정한 효의 정신은 웃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경애와 연결된다고 한다(유병열, 2008, 316).

이와 같은 의미의 효(孝)는 법교육의 본질에 입각하여 보면, 교과내용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다. 과거의 효(孝)관념에서는 무조건적인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이라는 일방적인 의무만을 요구한 측면이 있었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효관념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법적인 권리·의무 이론이 효과적이다. 오늘날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효관념도 상호적 관계로 이해하는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볼 때,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법교육은 효(孝)의 개념을 새로이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도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양육과 부양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차원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타인의 권리 존중(부모의 권리)이라는 법교육의 가치·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예와 연관되는 법교육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법교육은 가족관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가족관계의 이해를 논리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줌으로써 스스로의 의지로 효를 실천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육이다. 따라서 법교육은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능력의 기초인 효(孝)에 대한 논리적 지식을 갖추게 해 주는 교육이며, 가족 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어 인성교육의 핵심역량 육성에 부합하는 교육이라고 본다.

다. ‘정직’과의 관련성

정직(honesty)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창의·인성교육에서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덕목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미국 인성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인성교육과정에서도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기본적인 덕목이다(장희선,2015,50). 정직(正直)도 다른 인성교육의 핵심적 가치·덕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친숙하지만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쉽지 않다.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국립국어원,2012)이라고 하고 있다. 또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 즉 사실대로 말하고 당위대로 행하는 것’이 정직(정범모,2004;장희선,2015,50재인용)이라고 하고 정직은 도덕 그 자체이고 도덕성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직이라는 개념 속에 범주화될 수 있는 하위 덕목 내지 실천 덕목으로는 ‘거짓말 하지 않기’, ‘속이지 않기’, ‘흠치지 않기’ 등으로 ‘고의로 한 거짓 행동’과 대립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특징지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진솔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며, ‘질서의식’, ‘준법’, ‘정의감’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정직과 관련된 하위 덕목으로 ‘충실한(faithful)’,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거짓말 하지 않는(truthful)’, ‘성실한(loyal)’, ‘거짓 없는(sincere)’, ‘진실의(true)’ 등과 같은 것들을 제시한 연구(Walker & Henning,2004;장희선,2015,51재인용)가 있다. 또 정직의 하위 범주로 충실한(faith), 진실성(trust), 정당성(righteous), 준법성(principles) 등이라고 한 연구(장희선,2015,51)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정직의 개념 범주에 속하는 관련 하위덕목으로는 ‘진실함’, ‘신뢰’, ‘질서의식’, ‘준법’, ‘성실함’ 등이고, 구체적 행동규범으로는 ‘속이지 않기’, ‘흠치지 않기’, ‘거짓말 하지 않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직과 관련한 법교육의 원리로서 근대 사법의 적용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때에는

신의(信義)에 좇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는 법적용의 보편적 원리이자 법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이고 궁극적 목표이다. 신의성실이란 상대방의 신뢰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어느 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사법(私法)영역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사법(私法)영역에 있어서의 법교육 내용은 어느 것이나 정직이라는 인성교육의 핵심적 가치·덕목과 연결된다.

그런데 이 원칙은 비단 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 영역, 즉 학교에서 생활법 영역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행위법 영역인 형법에도 적용되는 원리이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법의 기능이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법의식과 준법정신, 권리행사의 바람직한 방법, 분쟁조정, 법적 문제해결능력 등의 주제들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두 적용되며 이는 정직과 직결되는 법교육의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사례중심의 학교 법교육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절도, 사기, 횡령과 같은 범죄 사례들은 정직이라는 덕목을 교육하는데 매우 합당하고 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한 법교육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자신이 처하게 될 상황에서의 정직성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타인과의 소통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한 법교육은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능의 육성을 위한 중심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책임’과의 관련성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혹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이다(국립국어원, 2013). 또 사회과의 시민성교육 이론에서는 ‘책임’이란 가족, 친구, 선생님, 혹은 공동체나 국가의 다른 시민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습관(W.C.Parker, 2009, 100), 혹은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된 인간 공동체 내에서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각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책임(이택휘·유병열, 2000, 119)이라고 한다.

이러한 책임의 정의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어떤 단체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자신의 의지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그것이다. 전자를 지위와 역할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가족 및 지역공동체, 인류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까지로 확대가 가능하다(정창우,2015,112). 그리고 후자를 행위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자신의 선택과 삶에 대한 책임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능력과 자원에 따라 선택의 자유를 누린 데 대한 책임인 것이다. 본 법에서 표현한 인성교육의 목표로서의 책임의 의미는 지위와 역할 책임이든 행위 책임이든 이러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아니하는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은 양면적 규범이다. 즉, 권리와 의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는 규범이므로 법교육의 내용은 권리와 더불어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 지위에 맞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는 바, 이는 개인적인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단체와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의무는 책임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본다. 법교육에서의 책임은 사법(私法)영역이든 공법영역이든 주로 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지만, 의무와 동일한 개념으로 책임을 논하는 경우에는 지위와 역할 책임도 포함되게 된다. 민법의 적용 원리 중 ‘무과실 책임’에 대한 학습은 대표적인 ‘지위와 역할에 따른 책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는 기회이다. 초,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의무에 대한 학습은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서 가지는 책임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이는 ‘책임’이라는 인성교육의 핵심적 가치·덕목과 연결된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학습’ 등은 행위책임에 대한 학습기회이다. 뿐만 아니라 법교육에서 다루는 ‘형사법 사례학습’은 대부분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위책임’을 학습하는 대표적인 기회이다.

법교육에서 ‘책임과 의무’라는 개념 학습이 가지는 의미는 인성교육상 큰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과 의무는 도덕적인 의무와 성질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은 도덕적 의무와 달리 그 책임의 추궁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교육에서 책임에 대한 교육은 책임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듯 법교육은 책임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하고 의무의 수행은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정착시키는 교육이므로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능력을 정착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

마. ‘존중’과의 관련성

존중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이라고 매우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존중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 전제되는 가치나 부수적인 개념들이 많다. 존중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정중하고 사려 깊

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그들이 존엄성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정창우,2015,110)이라고 한다. 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의 전제이기도 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존중하여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그 자체로서 인간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존중이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고귀한 가치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며, 이에는 3가지 주요 형식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이다(최관경,2008,258~259).

누구를 존중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 누구를 무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존중한다는 가치의 행동덕목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상대방(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존중과 무시는 각기 선순환과 악순환의 구조적 관계를 형성해 내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한 목표로서의 존중은 매우 의미가 크다. 즉, 존중은 자기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면 상호존중이 이루어지고, 상호존중은 상호신뢰를 가져와 결국은 인간존중으로 이어져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무시는 상호무시와 상호불신으로 이어져 결국은 인간무시의 인성을 형성하게 되므로 평화는 이를 수 없고 갈등과 투쟁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최관경,2008,260~262).

존중의 의미와 관련되는 학교 법교육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심되는 내용영역은 국민의 기본권(인권)에 대한 내용이다. 이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 우리 헌법 제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다. 본질적인 기본권이라 함은 파생적이고 개별적 기본권의 근거가 되며 전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즉,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누리고 평등을 요구하는 이유도 인간이 존엄하다는 데에 기초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야 하는 이유도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법적 권리이기 이전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논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권리에 대한 법교육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권리의 충돌과 권리 행사의 상대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는 그 행사과정에서 상호 충돌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학습자들이 그들이 가지는 권

리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권리행사의 제한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권리의 존재와 그 권리의 존중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교육에서 인간의 존엄성 교육은 인간존중 교육이며, 평등권에 대한 교육도 인간 존중교육이다. 법교육에서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한 교육내용도 타인의 명예와 재산에 대한 존중 교육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 원칙과 같은 절차에 대한 법교육도 가치·덕목은 ‘존중’이다. 이와 같이 학교 법교육의 대부분은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덕목인 ‘존중’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법교육을 통한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의 정착’은 결국 인성교육의 핵심역량인 공동체 내의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이며, 갈등해결 능력을 길러 주는 기본적인 지식이자 가치·태도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내용이다.

바. ‘배려’와의 관련성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배려를 인성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핵심 가치·덕목으로 제시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이기적·자기중심적인 현상의 심화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병리적 현상을 치유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배려를 실천하는 범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배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도와주거나 보살피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다. 배려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상대방을 지적·정서적·신체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이며, 간단히 말해서 ‘나와 남의 요구(needs)와 바람(wants)을 충족시켜 주는 일’이라고 한다(김수동,2011,10~11). 따라서 배려란 관계적 존재인 인간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필요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정창우,2015,111).

배려에는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 자신에 대한 배려는 자연적 배려이고, 남을 위한 배려는 윤리적 배려이다. 자연적 배려인 나(我) 혹은 혈연적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배려는 선천적이고 본능적이며 비합리적 배려로 ‘바람’과 ‘당위’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배려에서는 ‘바람’과 ‘당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배려자의 의지와 노력이 보다 요구(김수동,2011,11)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나를 위한 배려보다는 남을 위한 배려가 더욱 중요하고 배려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에 대

한 배려는 남에 대한 배려의 기초이자 준비이다(김수동,2011,12). 왜냐하면 배려란 어디까지나 남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에게 대한 배려와 남에 대한 배려가 모두 중요하다. 인성교육의 핵심적 가치·덕목들이 모두 그러하지만, 배려는 특히 실천이 중요하다. 배려실천이란 배려를 받거나 배려를 베푸는 것이므로 배려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배려능력이란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발되고, 배려를 받거나 그것을 베풀으로써 계발된다. 즉, 배려능력은 배려를 받거나 베풀 경험에 비례한다(김수동,2011,9).

이러한 배려의 의미를 파악하여 볼 때 하위 덕목 내지 실천 덕목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감정이입적 공감(empathy)이다. 왜냐하면 이는 남의 감정을 이해함에도 목적이 있지만 남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심리적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연민(compassion)으로, 이는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과 곤경 상황을 함께 느끼고 이를 개선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셋째는 관용(tolerance)이다. 오늘날 관용의 의미는 인종과 성, 외모, 문화, 신념, 능력, 성적 취향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개개인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도록 도와주는 덕목을 말한다(정창우,2015,111).

배려실천의 수준 또는 배려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남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가’, ‘남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자신이 지려고 하는가’, ‘상대방의 바람을 충족해 주는가’, ‘장점을 찾아 알려주는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가’, ‘구성원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자리에 없는 제삼자에 충실한가’, ‘나눔과 베풀을 실천하고 있는가’ 등이다.

법교육의 본질적 차원에서 보면 배려와 관련되는 것은 법개념의 이해나 적용원리에 대한 학습보다는 법문화 및 법의식의 이해의 학습에서 많이 나타난다. 법교육에서 법문화의 이해와 법의식의 올바른 정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초, 중등학교 법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법문화 및 법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법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 ‘양보와 관용’, ‘재판외의 분쟁해결’,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등(이대성,2011,159~162)은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습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법교육에서 강조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태도는 타인이 받는 고통과 곤경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인 배려심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가지기 어렵다. 또 법적 분쟁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소송전 화해, 조정 등의 방법이 있

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배려를 전제로 한 소송 전 화해에 대한 이해나, 조정 및 알선 등의 이해는 역시 인성교육에서 핵심역량에 속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을 기르는 필요한 지식이 된다.

일반적으로 법교육에서 다루는 사례학습에서의 법적 분쟁 사건들은 대부분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되며,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억울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어느 한 입장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적 사고를 훈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에 대한 이해는 철저히 ‘배려적 사고’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이해하고 그러한 가치·태도를 가지려면 당사자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합리적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인권보호 및 법적 분쟁 해결의 합리적 방안은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가치·덕목인 ‘배려’와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 ‘소통’과의 관련성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의 핵심적 가치·덕목으로 소통을 제시한 것은 우리 사회 위기의 한 단면이 ‘소통의 부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통(疏通)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혹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으로 풀이된다. 소통을 서구적 언어로 표현하면 communication(커뮤니케이션)이다. 이는 ‘공유된’, ‘일반적인’, ‘공적인’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communis*(코뮤니스)에서 개별적이고 사적인 개체를 ‘어떤 공동체에 편입시킨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정훈, 권성호, 2013, 129~130). 그런데 동양적인 의미에서 소통은 물길을 터서 연결시키거나, 인체의 막힌 기를 터서 연결시킨다는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트임’과 ‘연결’을 강조한다. 따라서 동양적으로는 트임과 연결을 통하여 과거의 삶의 양식을 비우고 친숙하지 않은 실질적인 타자와 새로운 삶의 양식을 구성하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정훈, 권성호, 2013, 130).

소통의 동양적 의미인 ‘트임’과 ‘연결’과 서구적 의미인 communication의 구성 요소를 좀 더 면밀히 생각해 보면, 트임이란 말문이 트이고 말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말문이란 입이요, 말귀란 듣는 귀를 의미하니 결국 입과 귀의 연결체계를 서구적인 의미로는 communi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통은 결국 서로 간에 말하고 듣는 연결 체계에 막힘이 없

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통능력은 ‘대화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 주장만이 옳다거나, 자신들의 요구가 가장 중요하며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상은 유아적인 자기중심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의 한 단면이다(윤평중,2011,87).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입과 귀의 배분적 불균형이라는 현상, 즉 말하기와 듣기의 비율이 맞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민영·노성중,2015,218). 즉, 인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사회 커뮤니케이션은 입의 트임과 귀의 열림의 상호적 연결체계에 의존하는 것인데(박승관,2011,99) 일방적인 말하기와 듣기의 관계로써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원만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상호성’과 ‘합리성’, ‘소통예의’이다(이범준·조성겸,2015,148). 상호성은 인간의 소통행위가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이며, 반대의견 듣기, 경청하기, 말하기 듣기의 균형, 상호작용하기 등의 행위들을 포용한다. 합리성은 ‘어떤 발언이나 행위가 타당한 이유와 근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소통예의는 표현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속어, 욕설, 공격성 언어, 차별적 표현, 비문법적 표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범준·조성겸,2015,148~156). 따라서 소통의 하위덕목은 관용, 논리성, 진정성, 객관성, 합리성 등을 들 수 있고, 실천덕목으로는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예의 있게 말하기, 경청하기 등을 꼽을 수 있다.

학교 법교육의 방법론 중 효과적이고 대표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학습방법이 논쟁학습법이다. 이러한 학습모형을 법리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재판이 가장 전형적인 논쟁의 장(場)이고 논리적 공방의 典型(model)이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의 양 당사자들은 모두 상대방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상대의 주장(반대의견) 경청,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에 대한 대응 등과 같은 상호성과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할 타당한 이유와 근거 제시라는 합리성이다(S.E.Redfield,2002,31). 그리고 논쟁점 외의 사항에 대한 언급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발언 등은 단호히 거부되는 것이 재판의 원칙이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소통의 장(場)이며, 소통의 능력이 결국 재판의 결과를 좌우한다.

법교육 방법론상 지향하는 논쟁적 학습(토론학습)은 이러한 재판의 진행

원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소통의 능력을 길러주고자 함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법교육상 논쟁수업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과 상대의 허점과 비논리를 지적하는 것인데, 제시되는 근거와 지적에는 모두 객관성과 합리성, 논리성, 진정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소통능력이며 아울러 문제해결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교육은 그 방법론적으로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가치·덕목인 ‘소통’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성교육의 핵심적 역량인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아. ‘협동’과의 관련성

협동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교육에서 강조해 오던 오래된 덕목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으며,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유용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개인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생활관계가 늘어나고, 개인주의가 정착되면서 이기적인 삶이 일상화되었다. 그 결과 공동체적 의식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인간성 파괴의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공동체 유지의 위기까지 초래하였다. 공동체 의식은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결합성을 의미하는 연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하나로 얽혀 있다는 의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의식 혹은 연대성 의식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협동의 가치를 새로이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협동을 통한 공동 체적 삶의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협동의 의미를 사전에서는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달리 협동이란 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을 창출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이다(유병열,2008,326). 그러므로 협동이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힘과 능력을 집약시키는 것이고, 상부상조하는 것이며, 공동체 발전과 번영의 필요조건이요 공동체 존속의 기본요인이다(정창우,2015,112). 협동은 모두 같은 동질의 사람들이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로 되는 것이므로 ‘조화’가 요구된다. 조화는 이질적인 요소가 부각되는 대립과 투쟁보다는 동질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순리적 사고를 강조한다. 따라서 협동의 하위 가치 혹은 실천 덕목으로는 공동체 의식, 연대의식, 조화, 개인적인 책무감을 강화하는 것, 서로 신뢰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42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그렇다면 학교 법교육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협동이라는 가치·덕목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법교육의 본질상 내용적 측면에서 보아 법의 이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혹은 공공성의 원리와 특히 사회법적인 내용 등은 협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의 이념 중 정의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각 개인의 노력을 협동이라 할 수 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과 배치되는 경우라면 그 권리의 행사를 인내하여야 한다는 법의 원리이므로 공동선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협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법교육에서 사회법적인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소비자와 제조자 및 유통업자, 사업자 상호간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들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공동선이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동선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과 협동이다. 법교육에서 다루는 이러한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협동이다. 따라서 법교육의 이러한 내용은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가치·덕목인 ‘협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양자의 관련성 정리

인성교육진흥법상 제시된 핵심적 가치·덕목 및 핵심역량과 법교육의 내용 및 가치·태도적인 측면의 목표들을 관련지어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교육과의 관련성을 논하는 입장이므로 표내용은 인성교육진흥법상 제시된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법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인성교육과 법교육의 공통적 실천 덕목의 추출, 그리고 법교육과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가치·태도 및 역량 등을 정리하였다.

인성교육 가치·덕목	가치·덕목의 의미	하위 덕목	관련 법교육 내용	인성 및 법교육상 공통적 실천 덕목	가치·태도/ 핵심역량
예(禮)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땅히 가져야 할 행동 예의에 관한 모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중 겸손 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규범의 필요성 국민의 권리 인권존중과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에게 친절 겸손한 말과 행동 에티켓을 지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 권리 존중, 자유 절차준

	절차나 질서를 준수하려는 태도		장 • 공공생활상 의무	기 • 규범 준수하기 • 절차의 존중	중 • 의사소통능력
효(孝)	•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 • 부모에게서 양육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	• 경애 • 우애 • 감은(感恩)	• 권리와 의무 • 청구권 • 가족관계 법	• 윗사람을 공경하기 • 아랫사람 사랑하기 • 형제자매 간 우애 있게 지내기	• 정당한 권위존중 •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
정직	•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 • 사실대로 말하고 당위대로 행하는 것	• 신뢰 • 성실 • 진실 • 준법	• 신의성실의 원칙 • 법치주의	• 거짓말 하지 않기 • 남을 속이지 않기 • 남의 것을 훔치지 않기	• 정의 •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
책임	•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나 역할에 따른 임무나 의무 • 자신의 의지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결과에 대한 의무, 부담, 제재	• 지위와 역할 책임 • 행위 책임	• 무과실 책임 • 국민의 의무 • 손해배상 사례 학습 • 형사법의 사례 학습	•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기 •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기	• 자발적 준법 • 갈등해결 능력
존중	•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고귀한 가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 • 자신과 타인, 모든 생명체와 환경에 대하여 소중한 마음을 가짐	• 자기 존중 • 타인 존중 • 생명체 존중	• 인간의 존엄성 • 행복추구권 • 국민의 기본권 • 영장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 일사부재리 원칙	• 남을 무시하지 않기 • 자신을 학대하지 않기 • 동·식물 등을 아끼고 사랑하기	• 정당한 권위의 존중 • 평등 • 갈등해결 능력
배려	• 도와주거나 보살피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 나와 남의 요구와 바람(행복, 복지)을 충족시켜 주는 일 혹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 공감 • 연민 • 관용	•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재판 외의 분쟁해결(화해, 조정)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남을 위로해 주기 •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수긍하기 •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 나눔과 베풀을 실천하기	• 관용, 자유 • 문제의 합리적 해결 • 의사소통 능력 • 갈등해결 능력
소통	• 막히지 않고 잘 통합	• 합리성	• 모의 재판 • 법적 사례 토	•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 평등, 관용,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 서로 간에 말하고 듣는 연결 체계에 막힘이 없어 대화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성 • 관용 • 객관성 • 진정성 	<p>론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례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의 있게 말하기(비속어, 공격성 언어, 차별적 표현 등) • 남의 말 경청하기 	<p>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능력 • 갈등해결 능력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함 •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힘과 능력을 집약시킴 • 상부상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화 • 공동체 의식 • 연대성 • 상호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적 내용 • 경제법적 내용 • 사회보장법적 내용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기 • 서로 믿고 의지하며 동질감 갖기 • 문제를 풀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평등 • 의사소통 능력 • 갈등해결 능력

V. 결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나 ‘능력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누구나 좋은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좋은 인성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서부터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그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 사회도 이제 그동안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에 수반된 이기주의와 그로 인한 부조리와 부패 등이 구조적 모순으로 자리잡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대형 사고와 대응하기 벅찬 학교 폭력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결론으로 등장한 것이 인성교육이고, 이를 위한 추동력의 확보수단이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이다. 결국 국가적 정책수행의 방향도 ‘능력보다는 인성’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인성교육이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 의견이 일치한다(홍순정의,2013;정창우,2015,47).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교과를 통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거나,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한 방법이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홍순정,2013,15~19), 법교육을 통한 방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 프로그램 등의 방법을 통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법교육은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덕목을 실천하는 데에 매우 적합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가치와 태도가 인성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핵심적인 역량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사회 법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직장인이나 일반 사회인들의 인성형성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인성교육이다. 학교 법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법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지는 학습방법은 주로 사례중심 학습프로그램이다. 법교육에서 사례는 실제로 일어난 것이거나, 실제 사건을 학습효과를 위하여 재구성한 것이므로 도덕적 인성교육보다는 가치·태도의 형성에서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성취수준이 달라진다. 인성교육을 한답시고 도덕적 훈계와 모델링을 통한 교육이 위주가 된다면 인성교육은 외면받을 것이며, 학업에 방해되는 것으로 치부되어 실패할 것이 틀림없다. 실질적이고 실감할 수 있는 사례와 생활경험을 통한 인성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 인성교육이든 사회 인성교육이든 인성교육의 대상자들이 자기 스스로 인성함양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인성형성의 기회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임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인성형성의 의지를 다지는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 프로그램일수록 좋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결론적으로 법교육은 인성교육의 방법론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진흥법상 제시되고 있는 여러 핵심적 가치·덕목 중 정직, 책임, 존중, 소통, 협동, 효(孝), 배려 등은 모두 초, 중, 고등학교 법교육 내용을 통하여 직접 길러줄 수 있는 지식과 가치·태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인성교육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 인성교육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 현실에서 일시적 경향이나 유행적인 교육열풍으로 지나가는 것이어서도 안된다. 적어도 학교 급별에 적합한 인성교육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지식탐구형, 토론형, 체험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 김길순,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제78집, 2015.
- 김수동, 논어에서의 ‘배려 실천’ 고찰, 인격교육 제5권 2호, 한국인격교육학회, 2011.
- 김지수, 효문화의 현대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10.
- 김충렬, 유가윤리강의, 예문서원, 1994
- 김태훈, 덕교육론, 양서원, 1999.)
- 민영·노성중, ‘소통’의 조건:한국사회의 시민간 정치대화 탐구,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011.5.
- 박상준,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의 방향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2권 2호,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 박성혁, 법교육의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 사회’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7권1호, 2005.
- 박승관, 한국 사회와 소통의 위기:소통의 역설과 공동체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011.5.
- 박용조, 초등 사회과에서 법교육의 적용과 변천, 사회과교육연구 제18권 1호, 2011.
- 박인현, 유능한 교사를 위한 사회과교육-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12.
- 박형근,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3권 1호,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 안혜리, 인성교육, 어른들 먼저 달라져야, 중앙일보, 2015.07.21, 31면
- 유병열, 인성교육의 성과와 과제, 5.31교육개혁 20주년 연속세미나, 교육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 2015.
- 윤병오,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과 덕목’의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제33호, 2011.
- 윤세원, 인성교육, 공정한 평가가 관건이다. 2015.7.21
- 윤평중, 담론의 원리와 소통의 실천:사실과 합리성이 소통을 가능케 한다, 한국언론학회심포지움 및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011.5.
- 은지용, 사회과 인성교육 개념 및 요소에 대한 탐색, 시민교육연구 제45권 3호, 2013.9.
- 이대성, 2009개정 교육과정상 법관련 내용의 연계성 분석, 법교육연구 제6권 제2호, 2011.

- 이범준·조성겸, 소통의 질 측정방법의 타당성 검토,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1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15.3.
- 이택휘·유병열, 도덕교육론, 양서원, 2000.
- 장승희,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의 본질과 인성교육의 방향, 윤리교육연구 제37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
- 장희선, 정직에 대한 개념 인식과 발달적 경향 연구, 인간발달연구 제22권, 2015.
- 정창우,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15.
- 정훈·권성호, 소통의 교육론으로서 프레네 교육의 의미, 학습과학연구 제7권 3호, 한양대학교 교육공학연구소, 2013.
- 최관경, 상호존중감을 형성하는 평등교육, 교육사상연구 제22권 제3호, 2008.
- 홍순정·강경희·박정자·오윤례·이숙희·전방실·정미자, 전생애 인성교육, 양서원, 2013.5.
- 허종렬,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제2권1호,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 허지현, 또 하나의 채점표, 인성교육진흥법, 한국문예신문, 119호(2015.08.31)
- Sarah E. Redfield, Thinking Like a Lawyer—An Educator’s Guide to Legal Analysis and Research, Carolina Academic Press, Durham, North Carolina, 2002.
- Walter C. Parker, Social Studies in Elementary Education, 13th Ed., Allyn & Bacon, 2009.

•• 연구 윤리 특강 ••

**학술연구자의 올바른
연구윤리와 학문 탐구**

[연구 윤리 특강]

학술연구자의 올바른 연구윤리와 학문 탐구

이 중 근(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서론-연구기관의 윤리적 상황
 - II. 연구기관의 부패 행위
 - III. 연구행위에 관한 부정-표절행위
 - IV.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윤리적 대응 방안
 - V. 결어
- *참고문헌

I. 서론 - 연구기관의 윤리적 상황

최근 우리 사회에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 횡령, 가짜학위 소지자의 횡행, 금전거래에 의한 연구비 배분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가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가치체계를 뒤흔들 만큼 만연해 있다. 물론 부패행위를 야기하는 주된 요소인 이기심이라는 것이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어서 연구윤리의 부패가 우리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체적으로 가난한 국가일수록 부패수준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부패행위에 가담할수록 연구기관은 빈약해진다. 이러한 연구윤리 측면에서의 불법행위는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연구기관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학문적 생산성에도 커다란 역효과를 미친다. 에드먼드 버크의 "부패가 만연한 곳에는 자유도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

연구윤리의 타락문제의 특징은 지리적인 경계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문화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연구기관에 있어서의 부패가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원칙이나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짚어 보기로 한다.

II. 연구기관의 부패 행위

1. 연구윤리의 타락과의 구별

연구기관의 부패행위는 비윤리적인 행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모든 부패행위는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모든 비윤리적인 행위가 반드시 부패행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의 교수가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연구가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한 부패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2. 지리적 보편성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인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였던 국가인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윤리의 타락과 연구기관의 부패현상은 만연해 있다. 교육기관들이 그 운영과정에서 윤리적 원칙들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담한 부정행위들이 가끔씩 보도되고 있다.²⁾

1) Myroslava Antonovych & Oleksandr Merezhko, Corruption as a Problem in Ukraine's Scholarship and Education, in 11 The Fulbrighter in Ukraine 2 (Nov. 2006).

2) 예를 들면, 한 전직 대학총장이 학생을 위한 대부자금과 펠그란트(Pell grant) 장학금에서 340만 달러를 횡령하여 학교채무의 변제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고, 지역전문대학(communitary college)이 회계부정으로 인가를 취소당하여 학교가 폐쇄되고 그 이사 중의 한 사람이 허위로 수업을 실시하였음을 위장하기 위해 유령의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일체의 공직을 맡지 못하게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부패행위의 새로운 국면에 착안하여 산업부문과 고등교육기관 사이의 재정적 결합을 통하여 기업의 영향력이 점증하는 사실을 두고 진리를 탐구한다는 대학의 이상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산업부문에 의한 연구비 지원의 증가와 1980년의 「베이-돌법(Bayh-Dole Act)」에 의하여 정부자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특허취득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연구의 상업화가 더욱 진행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³⁾ 기업이 지원한 연구자금으로 수행된 연구가 중립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3. 정치체제적 보편성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정치체제 못지않게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부정입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부패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경대학의 지원서 양식에 학생모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수들의 휴대폰 전화번호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입학과 관련하여 부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의 成都 비즈니스 데일리誌는 이 대학 지원자들이 자기의 지원서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받기 위하여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뇌물을 제공하고픈 유혹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

대학이 입학허가를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형식의 부패는 舊소련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일상적인 일이었으며 소련붕괴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⁵⁾

되는 처벌을 받은 사건 및 3개의 주요 대학의 학생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이사들이 대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대부받을 것을 권유하여 많은 이득을 올린 사건도 보도된 바 있다. Andrea Jones, Ex-President of Morris Brown Gets Probation, Atlanta J.-Const., Jan. 4, 2007; Jonathan D. Glater, College Officers Profited by Sale of Lender Stock, N.Y. Times, Apr. 5, 2007 등 참조.

3) Harold Orlans, Potpourri, Change, May 1, 2004, at 6.

4) Peking University Admission Procedure Comes Under Fire, S. China Morning Post, June 11, 2003, at 7. 대학의 입학업무 관련자와의 친분 하에 역할을 하였음을 주장하는 브로커에게 응분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한다.

5) Vera Rich, Law Shift Could Trap Dissenting Lecturers, Times Higher Educ. Supp., Aug. 4, 2006, at 10.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의 일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뇌물의 액수는 재학기간 5년 동안의 등록금의 합계 보다 많다고도 한다(College Cleanup Drive Begins,

카자흐스탄의 대학에서도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수에게 지급하는 돈의 액수에 따라 학점이 결정된다고 하고,⁶⁾ 키르기스스탄의 대학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대학이나 특정 교수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쉽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한 대학교수의 말에 의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하면 차에 기름을 치면 되고, 기름을 얼마나 쳐야 되는지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⁷⁾

Ⅲ. 연구행위에 관한 부정 — 표절행위

한국법과인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연구윤리규정은 제4조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이중 논문 게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하고,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가설, 방법,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이 없이 도용한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타인의 연구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중 논문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그러나 특히, 연구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표절행위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창의적인 연구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수행한 선행 연구의 축적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오늘날은 연구논문이나 학문적 저작물에 오려붙일 자료가 인터

Moscow Times, July 12, 2004).

6) Associated Press, 63 Cases of HIV in Children, Augusta Chron. (Ga.), Sept. 29, 2006, at A12.

7) Dina Tokbayeva, How to Become a Student?, Times Cent. Asia (Kyrg.), July 13, 2006.

8) http://www.khlea.org/menu_04_03.php(2014.10.26. 검색)

넷에 널려 있는 관계로 표절행위는 세계적인 문제로서 심각성이 훨씬 더해졌다. 일반적인 표절행위 이외에도 인터넷상으로 논문작성을 주문하여 구매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이러한 형식의 학문적 사기는 단순한 실수나 인용에 관한 룰을 위반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정행위이다.

표절행위가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정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표절자에게 학문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표절행위가 폭로되는 경우에는 표절행위가 발생한 대학의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무고한 교수나 학생들이 학문적 성실성과 정직성을 의심받게 되는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표절행위에 교육부문의 윤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표절이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범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단어나 구절의 도용에만 표절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자료를 밝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표절을 불허하는 윤리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 표절에 관한 개념 자체가 일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⁹⁾ 또한 의도적인 표절행위와 전혀 고의성이 없는 표절행위 사이에는 무관심을 포괄하는 부주의(recklessness)를 책임요건으로 요구하는 중간지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윤리강령을 자세하게 입안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많은 윤리현장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¹⁰⁾ 더구나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이 표절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도 있다. 그것은 표절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 온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책임자들이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대학이 외부의 조사를 자초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9) 표절행위에는 고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개인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표절이란 귀속을 밝히지 않고 타인의 말이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의 소개에 대해서는, Kavita Kumar, SIU Spatting Over Plagiarism-Or is it Over Leadership?, St. Louis Post-Dispatch, Aug. 6, 2006 참조.

10) Vincent R. Johnson, Corruption in Education : A Global Legal Change, 48 SANTA CLARA L. REV. 1, 73-74 (2008)

IV.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윤리적 대응 방안

1. 윤리성 제고방안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은 제8조에서 연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자체검증체계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윤리적 원칙의 선언과 윤리적 지도력의 유지

윤리적 원칙을 선언하는 것은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주요 윤리적 원칙을 선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원칙들이 연구기관 내부의 징계절차를 통하여, 때로는 법정의 판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윤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보도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지나치게 사소한 것을 문제 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윤리적 원칙의 선언과 더불어 윤리적 지도력의 유지가 필요하다. 윤리적 지도력을 대학 차원에서 보면, 대학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훌륭한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업주의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가들은 대학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중점을 둔 나머지 교수나 학생들의 표절행위나 부정행위를 변명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윤리적 지도력은 부패와의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연구윤리 측면에서의 비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3. 윤리강령의 제정과 엄격한 시행

윤리강령은 무엇이 금지되고 요구되는 가를 분명히 적시하고 문제가 된 위반행위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적법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윤리강령은 고의, 부주의, 과실 또는 무과실 등 어느 정도의 죄책에 대하여 처벌하는지와 그러한 죄책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윤리강령에 의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죄책의 가능성이 명백하고 확실한(clear and convincing) 정도로 충분한지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입증을 요하는지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강령의 규정에서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하여 조사나 판단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독립성과 보복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절차는 모두 지켜졌는지 또는 윤리강령은 정확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재심절차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 원칙의 위반행위와 관행에 따른 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리적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타당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윤리적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에 관한 한 부패의 제로(零)화는 다른 영역에서도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연구부문에서도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어떤 점에서는, 부정행위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규칙과 관례들은 너무나 경직되고 성가실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라서 규칙과 관례가 가져다 주는 혜택이 그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압도당하기도 한다. 일단 부패방지를 위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그 비용의 수준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은 곳에서 결정되어야 한다.¹¹⁾ 따라서, 연구부문에서의 윤리적 체제의 실행은 윤리적 원칙의 완전한 실행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만큼만 실행하는 선에서 만족하여야 한다.

11) SUSAN ROSE-ACKERMAN,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S 52 (1999).

V. 결 어

어느 나라 어느 세대 할 것 없이 모든 교육기관은 부패행위와 투쟁해 왔고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교육이나 연구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영원히 달성될 수 없는 목표일 지도 모른다. 새로운 학생, 교수나 연구자, 그리고 새로운 경영자는 그들의 선배나 선임자를 대체할 것이고, 또 인물 면에서의 이러한 교체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부패의 기회를 한층 더 확대재생산할 것이다. 특히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부정행위의 종류도 다양하게 증가하므로 연구윤리강령에서는 학문적 비행이 넓게 정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단행본)

SUSAN ROSE-ACKERMAN,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S 52 (1999).

(논문)

Myroslava Antonovych & Oleksandr Merezhko, Corruption as a Problem
in Ukraine's Scholarship and Education, in 11 The Fulbrighter
in Ukraine (Nov. 2006).

Vincent R. Johnson, Corruption in Education : A Global Legal Change, 48
SANTA CLARA L. REV. 1 (2008).

(언론기사 기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윤리규정

(http://www.khlea.org/menu_04_03.php(2014.10.26. 검색)

Andrea Jones, Ex-President of Morris Brown Gets Probation, Atlanta
J.-Const., Jan. 4, 2007.

Associated Press, 63 Cases of HIV in Children, Augusta Chron. (Ga.),
Sept. 29, 2006.

Dina Tokbayeva, How to Become a Student?, Times Cent. Asia (Kyrg.),
July 13, 2006.

Jonathan D. Glater, College Officers Profited by Sale of Lender Stock,
N.Y. Times, Apr. 5, 2007.

Harold Orlans, Potpourri, Change, May 1, 2004.

Kavita Kumar, SIU Spatting Over Plagiarism-Or is it Over Leadership?,

160 ·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St. Louis Post-Dispatch, Aug. 6, 2006.

Peking University Admission Procedure Comes Under Fire, S. China
Morning Post, June 11, 2003.

Vera Rich, Law Shift Could Trap Dissenting Lecturers, Times Higher
Educ. Supp., Aug. 4, 2006.

통산 제21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과 과제

2015년 11월 14일 인쇄
2015년 11월 14일 발행

발행처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발행자 / 최윤진
편집인 / 김윤나, 이지현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61(서초동 1650번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
Tel: 02-3475-2431
E-mail: aima3041@daum.net
Homepage: <http://www.khlea.org>

인쇄처 / (주) 가람문화사
Tel: 02-873-2362
